

언론 중재

| Focus on Media |

열린 공간, 닫힌 댓글

| 사건 속 법률 |

누구를 위해
언론은 보도하는가

|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인쇄 2015년 6월 26일
발행 2015년 6월 30일
등록 1981년 10월 14일
등록번호 서울중,바00002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397-3114
FAX 02-397-3049
www.pac.or.kr
디자인 · 인쇄 비주얼트랜드 02-517-5450

편집위원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자성우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순 한국경제신문 기자 /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본지는 집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 중재

Vol. 135

Summer 2015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언론 중재

Summer 2015

CONTENTS

Focus on Media

06 열린 공간, 닫힌 댓글

- 저널리즘 관점에서 본 댓글의 효과와 사회적 함의 _이은주
- 인터넷상의 아누스, 악플의 사회심리학 _나은영
- 판결로 본 기사댓글의 법적 책임 _윤성욱

칼럼

40 세월호 언론 참사, '1막'과 '2막'에서 끝나야 한다 _심석태

사건 속 법률

44 누구를 위해 언론은 보도하는가

- 언론 윤리와 JTBC 성완종 인터뷰 녹음파일 방송 논란 _양재규

판례토크

56 사실의 과장과 왜곡

- 언론보도의 '분장'과 '변장' _조원철





Movie with Legal Mind

- 60**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_김주연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 66**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 페이스북과 EU의 공방 _성선제

해외통신원 기고

- 78**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RIPA)과 언론인에 대한 감청 논란 _김지현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 86** 영국 명예훼손법 및 해설
(Defamation Act 2013 and Explanatory Notes) _박용상

경기토론회 발제문 요약

- 100**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과제 _홍문기
-



이은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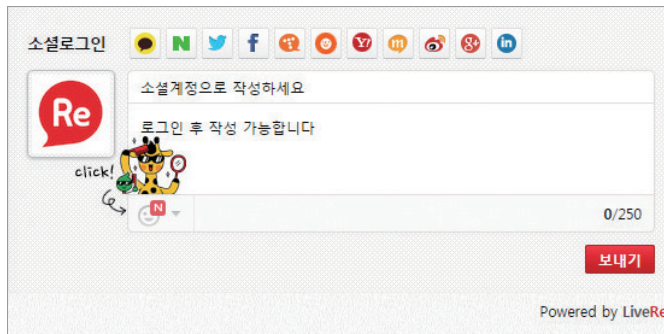
저널리즘 관점에서 본 댓글의 효과와 사회적 함의

2002년 2월 오마이뉴스가 인터넷 뉴스 사이트로서는 처음으로 댓글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같은 해 디지털조선(조선일보), 조인스닷컴(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사들이 댓글 기능을 도입했다. 2004년에는 국내 최대 뉴스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댓글 기능을 선보이면서 댓글은 온라인 저널리즘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댓글 도입 초기에는 뉴스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전통적 매스 미디어와 달리 댓글을 통해 뉴스 이용자들이 기사를 읽고 공공의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일종의 공론장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견해는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반복하며 개인 감정을 무분별하게 발산하는 댓글이 주류를 이루면서¹⁾ 이러한 낙관적 기대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후 악성 댓글, 광고성 스팸 댓글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후에 위험 결정을 받기는 했으나) 제한적 본인 확인제와 같은 법적 조치가 만들어지는 한편, 작성자가 자신의 SNS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댓글을 달 수 있는 소셜 댓글 서비스도 출시됐다. 소셜 댓글은 2010년 블로터닷컴을 시작으로 국내에 도입되어 2015년 현재 네이버를 비롯한 대부분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 채택하고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기존 소셜 계정을 통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기사의 URL과 댓글 내용이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된다는 점에서 일반 댓글과는 차이를 보

1) 이광수·김병석, 2009, “인터넷 토론공간에서의 의사소통행위양식에 대한 연구: ‘쌍용자동차’와 ‘쥐머리 새우깡’ 관련 댓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2권 제2호, 25-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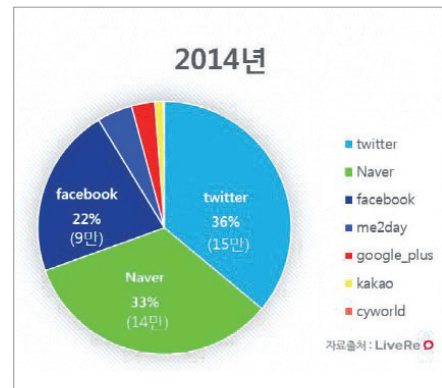
인다. 국내 최대 소셜 댓글 서비스 제공자인 라이브리에 따르면, 2013년 51만 2천 개였던 주요 언론사 사이트의 소셜 댓글은 2014년에는 80만 4천 개로 증가했으며, 2014년의 경우,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작성한 경우가 가장 많고(36%), 그 뒤를 네이버(33%), 페이스북(22%) 등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셜 댓글 서비스 제공자 라이브리의 소셜로그인 화면 캡처 (출처 : 라이브리)



● 주요 언론사 사이트의 소셜 댓글 증감량 (출처 : 라이브리)



● 2014년 전체 소셜 댓글에 대한 매체별 비율 (출처 : 라이브리)

익명성의 그늘 아래 정치인, 연예인처럼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성 발언이 난무하고, 특정 지역이나 성별, 종교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댓글 공간을 어지럽히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기사댓글을 어느 선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제기돼 왔다. 나아가 소위 '알바'를 동원하여 댓글을 조작하려는 시도는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는 사람들이 댓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보다는 댓글의 영향력에 대한 막연한 가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없지 않다. 구체적으로, 2009년 15세부터 45세 사이의 포털 뉴스 이용자 1,036여 명을 대상으로 댓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²⁾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댓글의 수준이 낮다”(48.7%), “홍보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등 의도적으로 작성되는 댓글이 많다”(60.8%)는 데에 동의함으로써 댓글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뉴스 댓글이 이슈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데 유용”(51.1%)하고 “여론을 한쪽으로 쏠리게 한다”(48.4%)고 응답했다. 20대에서 50대 사이 서울 시민 506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도 응답자들은 온라인 뉴스 댓글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보통이하(7점 만점에 평균 3.69)의 점수를 주었으나, 정보적 유용성(“기사만으로 알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댓글을 통해 기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은 상대적으로 후하게 평가하는(7점 만점에 평균 4.57) 이중적 시각을 보여준 바 있다.³⁾ 이렇듯 ‘댓글은 믿을 수 없고 질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좌우하는 힘을 지녔다’는 세간의 인식이야말로 그동안 댓글 관련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저널리즘적 관점에서 댓글이 뉴스 이용자의 여론 인식, 보도된 사안에 대한 태도, 뉴스 기사에 대한 평가 및 이해, 현실에 대한 인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결과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언론’의 일부로서 기사댓글의 사회적 함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댓글을 읽으면 여론이 보인다?

각종 조사결과를 보면 기사댓글을 읽는 사람들에 비해 댓글을 실제로 작성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고, 뉴스 이용자들 역시 댓글 작성자들을 소수의 극단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딱히 할 일이 없는 사람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댓글에 드러난 의견을 마치 한국 사회 전체의 여론인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찬·반 투표수와 댓글을 비교했을 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수백 명의 찬성이나 반대가 열 명 남짓한 사람들이 남긴 댓글보다는 여론 대표성이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2) 이창호 · 이호영, 2009, “포털 이용자의 포털 뉴스이용패턴 및 포털의 언론역할에 관한 인식,” 『한국언론정보학보』 제46권, 177-211쪽.

3) 김동윤 · 홍하은, 2015, “정치참여 수단으로서 댓글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한계: 비선거 시기 온라인 및 SNS 뉴스 댓글에 대한 인식과 활동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32권 제1호, 51-86쪽.

데도, 사람들이 여론을 추측함에 있어 기사에 대한 찬성, 반대 수보다 소수 댓글에 나타난 개인적 견해에 의존한다는 점⁴⁾은 댓글이 여론을 추정하는 단서로서 강력한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소수의, 심지어 조작되었을지도 모르는 댓글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 전체의 여론을 짐작하는 비합리적 경향은 평소 논리적, 분석적 사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다.⁵⁾

본인이 의식하고 있는 그렇지 않든, 대부분의 뉴스 이용자가 기사에 달린 댓글을 읽으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여론을 추정한다는 사실은, 뉴스 이용자가 여론에 대해 (잠재적으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보다도 인식 이외에 다른 부수적 효과가 파생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큰 중요성을 가진다. 즉, 댓글을 통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믿음은, 사람들이 댓글을 읽고 여론을 추정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세라고 판단되는 여론의 흐름에 본인도 동조하게 된다는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다수 의견, 혹은 이기는 쪽에 편승하려는 경향은 소위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댓글을 읽은 뒤 사람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댓글과 같은 방향으로 자신의 태도를 실제로 바꾸게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예컨대 기사의 논조와 댓글의 견해가 이슈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을 때, 댓글이 기사보다 독자의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효과는 정제되지 않은 언어와 격한 감정을 분출하는 소위 ‘질 낮은’ 댓글에서도 발견되었다.⁶⁾ 또한 온라인 뉴스 기사와 기사에 달린 긍정적 또는 부정적 베스트 댓글을 읽고 본인의 의견을 댓글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긍정적 베스트 댓글을 읽은 집단은 부정적 베스트 댓글을 읽은 집단이나 중립적 댓글을 읽은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댓글을 더 많이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댓글(베스트 댓글)은 독자의 의견(보다 정확히는 의견 표명)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⁷⁾ 이러한 결과들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댓글에 의해 여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

4) Lee, E. J. and Y. J. Jang, 2010, "What Do Others' Reactions to News on Internet Portal Sites Tell Us? Effects of Presentation Format and Readers' Need for Cognition on Reality Perception," *Communication Research*, vol. 37, no. 6, pp. 825-846.

5) 이은주 · 장윤재, 2009, "인터넷 뉴스 댓글이 여론 및 기사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지각과 수용자의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4호, 50-71쪽.

6) 양혜승, 2008, "인터넷 뉴스 댓글의 견해와 품질이 독자들의 이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2권 제2호, 254-281쪽.

7) 문광수 · 김슬 · 오세진, 2013, "베스트 댓글의 방향성이 일반댓글의 동조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201-211쪽.

할 수 있지만, 반면에 댓글에 의한 태도 변화가 논리적 사고를 기피하는 사람들에게서만 제한적으로 발견되거나⁸⁾ 댓글이 뉴스 이용자의 의견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⁹⁾도 있음을 고려할 때, 댓글이 어떤 조건하에서 사람들의 의견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댓글이 뉴스 이용자들의 의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막연하게 댓글이 우리 사회의 여론을 좌우 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제3자 효과’(The Third-Person Effect)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제3자 효과는 미디어가 본인보다 다른 사람들(제3자)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지칭하는 용어로,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을 과장해서 인식하는 일반적 경향을 설명하는 개념이었으나 댓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즉, 나는 댓글의 문제점을 꿰뚫어 보고 있고, 그래서 댓글을 읽었다고 해서 생각이나 태도를 바꾼다거나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문제 있는 댓글을 읽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거나 그릇된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악성 댓글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신보다는 일반 성인이, 일반 성인보다는 어린이·청소년이 악성 댓글의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사실 댓글의 영향력에 대한 지각은 댓글에 대한 법적 규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댓글의 영향력이 크다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찬성한다는 점¹¹⁾에서 댓글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뚜렷한 근거 없이 과대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선거 시기에 누군가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을 때 (본인은 그렇지 않지만) 해당 댓글을 읽은 많은 네티즌들이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투표의사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같은 댓글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이다.

8) Lee, E. J. and Y. J. Jang(2010), pp. 825-846.

9) 김은미·선유화, 2006, “댓글에 대한 노출이 뉴스 수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제50권 제4호, 33-64쪽.

10) 유흥식, 2010, “악성 댓글에 대한 제3자 효과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4권 제5호, 238-278쪽.

11) 정일권·김영석, 2006,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댓글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론동향 지각과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0권 제4호, 302-327쪽.

맞춤법도 틀리면서 네가 기자냐?

여론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이자 향후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원으로서 댓글을 이해하는 시각과 더불어, 뉴스 기사와 나란히 제시되어 기사에 대한 평가 및 기사 내용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주는 독립적 텍스트로서 댓글을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영국 가디언지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기자들은 댓글로 인해 기사의 정확성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고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응답하면서 동시에 악성 댓글 때문에 기자 개인 혹은 언론사의 신뢰도가 낮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¹²⁾ 사실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는 “기자양반, XX는 그게 아니라고”같은 점잖은 훈수부터 “맞춤법도 틀리면서 네가 기자냐?”, “요즘 기자되기 쉽네”같은 날선 지적에 이르기까지 기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보충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사 내용의 오류를 지적하는 댓글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정치인,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은 사람일수록 인터넷 뉴스 댓글을 더 많이 읽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¹³⁾ 기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담고 있는 댓글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뿐 아니라 전체 언론 종사자 및 뉴스 조직에 대한 불신을 한층 강화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기사의 내용과 댓글의 내용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천박한 표현과 속어가 섞여 있는 질 낮은 댓글과 그렇지 않은 댓글을 보여 준 경우, 동일한 기사를 읽었음에도 질 낮은 댓글을 함께 읽은 사람들이 기사의 질을 더 낮게 평가하는, 기자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고¹⁴⁾ 딱히 악성 댓글이 아니더라도 댓글에서 제시된 입장이 기사의 논조와 반대되는 경우, 독자들은 기사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정확하며, 신뢰하기 어렵고, 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¹⁵⁾ 나아가 댓글의 방향성에 따라 기사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기사의 논조 자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본인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는 댓글들을 읽은 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중립적이라고 판단한) 기사의 논조가 본인의 의견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평가했다.¹⁶⁾ 적대적 미디어 지각(Hostile

12) Singer, J. B. and I. Ashman, 2009, ““Comment Is Free, but Facts Are Sacred”: User-Generated Content and Ethical Constructs at the Guardian,”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vol. 24, pp. 3–21.

13) 나은경 · 이강형 · 김현석, 2009, “댓글 읽기/쓰기를 통한 온라인 소통이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갖는 의미: 인터넷 뉴스 댓글 이용과 사회신뢰, 정치신뢰, 언론신뢰, 그리고 정치지식,”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1호, 109–132쪽.

14) 김은미 · 선유화(2006), 33–64쪽.

15) 이은주 · 장윤재(2009), 50–71쪽.

16) Lee, E. J., 2012, “That’s Not the Way It Is: How User-Generated Comments on the News Affect Perceived Media Bia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 18, pp. 32–45.

Media Perception)은 댓글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관찰된 현상으로, 해당 이슈에 대해 뚜렷한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높은 사람들이 중립적인 뉴스 보도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입장에 적대적이라고(달리 말하면 자신들과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호의적이라고) 믿는 지각의 편향성을 가리킨다. 댓글의 내용에 따라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더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댓글의 질에 따라 기사의 질을 달리 평가할 수 있고, 더불어 뉴스 기사와 댓글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동화 효과(Assimilation Effect)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사람들이 기사의 내용과 댓글의 내용이 별개의 정보원에 의한 것임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예컨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서 해당 정치인을 두둔하는 내용이 있었을 경우, 기사와 댓글을 함께 읽은 독자가 기사에서 그 내용을 읽은 것으로 착각하고 기사가 해당 정치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흔히 의제설정기능(Agenda-Setting Function)을 꼽는다. 매일 발생하는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 이슈들 중에서 공중이 알아야 하는 것, 알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선별해서 보도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뉴스 미디어는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되어 왔다. 또한 독자들은 보도가 얼마나 크게, 어느 지면에 났는가에 따라 해당 의제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곤 했다. 이처럼 독자적인 취재, 편집 활동을 통해 언론이 사회적 의제를 설정했던 과거와는 달리, 포털 뉴스 사이트에는 댓글 많은 기사들이 별도로 순위가 매겨진 채 잘 보이는 곳에 게시된다. 이들 기사는 유명인의 연애, 결혼, 이혼 소식처럼 전통적 의미로는 뉴스 가치가 높지 않은 기사가 대부분이지만, 무수히 생산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독자들이 어떤 기사를 찾아 읽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 기준으로 손쉽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집단적 의제형성(Collective Agenda-Building)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NAVER 뉴스 TV 연예 스포츠 뉴스스탠드 오늘의신문 날씨

06.16 (화) ☀️ 올분도 21°C 주요뉴스 [특가자 김재필] 더단 출연소 보급여... "전기자, 안 살..."

뉴스 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세계 IT/과학 오피니언 포토 TV 행킹뉴스

행킹뉴스

많이 본 뉴스
주간 클릭
주간 댓글
주간 참여
일게 안에

주간 댓글

< 2015.06.06 - 06.12 > [이벤트]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세계 IT/과학 연예 포토 TV

분야별 상위 | 전체순위

각종이벤트 상위 5개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 [더보기]

- 임신부 메르스 환자 첫 발생... "검사 거부당했다"**
[경거] 임신부 가문대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 입원해있는 40대 임신부가 오늘 오후 메르스... YTN TV | 2015-06-09
- 선소자 축제 서울광장서 개막... 보수단체는 "맞불"**... 연합뉴스 | 2015-06-09
- "중국여행 가겠다" 메르스 자택 격리자 실외에 방세**... 연합뉴스 | 2015-06-11
- 이번호가 확산 교배... 정부 메르스 초강수 대책 쏟아내**... B11투데이 | 2015-06-09
- 박원순 "④병원, 정보공유 안 하면 모든 조치할 것"**... 연합뉴스 | 2015-06-06

TV연예 [더보기]

- 두표 논란 '젤카' 측 "다과 소동 오류... '부정투표' 맞다"**
(CBS노컷뉴스 유영정 기자) 경각 '젤카문트다문' 로고, (공식 홈페이지 캡처) 엠넷 '엠 카운트다운'이 투표 논란에 대한 입장... 노컷뉴스 | 2015-06-11
- 박명 "행복행, 파죽의 '젤카' 1위... 음원 사적연가"**... OSEN | 2015-06-11
- "냉정과" 논란의 행가들, 김동 상대로 찾 승**... 엑스포츠뉴스 | 2015-06-08
- "4가지" 홍수야, 걸어진 생캐들, 학 달라진 미모**... OSEN | 2015-06-09
- 엑스, 방송출연 없이 '다들'도 1위, 2관왕 '음원' 사들**... OSEN | 2015-06-12

미디어다음 연예 스포츠 KBO리그

뉴스 홈 주요뉴스 이슈 행킹뉴스 TV 뉴스통계

실시간 공감 많이 본 댓글 많은 지역별 연령별 언론사별 실시간

< 2015.06.16 > [일렉] [오늘]

- "박원순 정말 나쁜 사람, 동물 쳤다" 연예인 심자포화파도...**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중등호흡기증후군) 관련 기자회견을 '동물'을 찬 것이... 쿠키뉴스 | 2015.06.16. 06:41 | 10925
- 초등교 손씻기 수업 참관하는 박 대통령**
[서울=뉴스] 김광복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메르스(MERS) 중등호흡기증후군) 대응 관련 교육현장 방문 일정으로... 뉴스 | 2015.06.16. 10:39 | 2818
- < SNS 여론 > '외국인 관광객 메르스 걸리면 3천달러 지원...'**
"외국 관광객 유치 절경은 메르스 근절" "메르스 확산 막는데 돈 써야" (서울=연합뉴스) 한혜란 기자 = "외국인 관광객이 메... 연합뉴스 | 2015.06.16. 15:42 | 2724
- 대구도 풀렸다. 50대 공무원 메르스 첫 확진(종합)**
지난달 말 삼성서울병원 모친 병간호... 접촉자 50여명 자가격리(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에서 중등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연합뉴스 | 2015.06.16. 06:44 | 1602
- 논바다 쪽쪽 갈라지는데 4대강 물은 참람참람 넘쳐**
16개 보 관개수로 설치 안 돼 물 활용 제한적... 물수 공급계획 전무, 체계적인 물관리 시급(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연합뉴스 | 2015.06.16. | 1552

포털 뉴스 사이트 내 댓글 많은 기사들
(출처 : 네이버 뉴스, 미디어다음)

댓글은 어떤 기사를 읽을 것인가뿐 아니라 보도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도 과정에서 사건의 일부 국면만을 선택, 강조하고 다른 측면은 무시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특정한 방향에서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것을 틀짓기(프레이밍 Framing) 효과라고 하는데, 기사에 달린 댓글이 바로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을 어떤 틀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결정해주기도

한다. 예컨대 통상적인 범죄 기사에 범죄 발생지역을 거론하며 공공연하게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댓글(예: “또 XX도냐?! 역시. 무서운 종자들이네~ 인간 말종 동네~”, “XX도 사람들은 제발 서울에 좀 기어올라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 그냥 니네끼리 줄치고 살아라, 민폐 끼치지 말고...”)이 달린 경우와 지역감정과 무관한 댓글이 달린 경우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은 해당 지역의 범죄 발생률을 다른 지역보다 더 높게 추정하였다.¹⁷⁾ 이러한 결과는 독자들이 비록 댓글에 나타난 특정 지역에 대한 악의적 편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댓글에 노출되었을 때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부지불식간에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현상은 기사에서 보도된 것과 다른 종류의 범죄에까지 폭넓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신의 출신 지역이나 고향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특정 지역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댓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다 흥미로운 것은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을 다른 작성자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경우(예: “지역감정 부추기는 세상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녀들... 이때다 싶어서 얼릉 달려드는데... 전라도라서, 아니면 경상도라서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등? 좁아터진 나라에서 가지가지한다, 예효.”)에는 악성 댓글이 해당 지역의 범죄율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사라졌다는 점으로, 악성 댓글에 대한 합리적이고 분별 있는 비판 댓글이 일종의 교정 작용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지역을 언급한 댓글에 노출된 경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댓글만 읽었든 이를 반박하는 댓글까지 함께 읽었든, 다른 범죄 관련 기사를 읽고 난 뒤 기사 내용에 포함된 범죄 발생지역을 더 잘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댓글의 내용에 따라 사람들이 보도된 사건의 어떤 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주의와 관련된 댓글을 읽은 사람들은 지역감정이 지속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다른 요인에 비해 뉴스 매체의 책임을 꼽는 경향이 더 높았다. 사실 그들이 읽은 기사는 범죄 관련 스트레이트 기사로, 6하 원칙에 따라 관련 사실만 객관적으로 보도했는데도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과 비방이 포함된 댓글을 읽고 난 뒤 지역감정을 뉴스 매체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기사와 댓글을 분리해서 처리하지 못함을 시사하는 또 다른 증거로 볼 수 있다.

17) Lee, E. J., H. S. Kim and J. Cho, 2015, “How User-Generated Comments Prime News Processing: Activation and Refutation of Regional Stereotypes,”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연례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댓글

댓글 저널리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댓글 때문에 기사를 읽는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댓글은 인터넷 뉴스 사이트의 핵심 콘텐츠로 확고히 뿌리를 내렸다. 그간의 논의가 댓글의 효과에 대한 막연한 가정에 근거하여 주로 규범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본고에서는 저널리즘적 관점에서 댓글의 효과에 대한 그간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검토함으로써 댓글의 사회적 함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누구나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고 1인 미디어의 주인이 되는 시대, 인터넷 뉴스 사이트의 댓글은 예전 구색 갖추기 용으로 담당자에 의해 선별되어 신문 한 귀퉁이를 차지했던 ‘독자의 소리’와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독립적 콘텐츠이다. 뉴스 이용자들은 댓글을 통해 기자의 지배적 해석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현실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이에 동의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기자나 언론사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의 통제 밖에 있는 댓글로 인해 자신들의 공신력이 의심받고 보도 내용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잘못된 해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댓글 공간을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견 개진의 장으로 만드는 데 언론 스스로가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모쪼록 이 글이 이미 언론보도의 일부로 자리 잡은 댓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문제 있는 댓글들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예방하고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 논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나은영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인터넷상의 야누스, 악플의 사회심리학

1. 악플, 그 정체는?

‘악플’이란 ‘악성 리플(Reply)’ 또는 ‘악성 댓글’의 줄임말로,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글 또는 콘텐츠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달거나 헐뜯을 하는 것을 지칭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이 상당 부분 글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에 대한 대응도 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글이 아닌 사진이나 동영상 등과 같은 콘텐츠에 대해서도 댓글을 달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상, 인터넷 콘텐츠 전반에 대한 악의적 반응을 명시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를 통틀어 악플로 간주할 수 있다.

일반적인 댓글에 비해 악성 댓글은 일종의 무기가 되어, 악플의 대상이 된 사람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힌다. 심지어 악플의 대상을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한 악성 댓글도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대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그 대상은 마녀사냥 형태의 댓글 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악플은 언어폭력의 범주에 속하며, 심할 경우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악플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악플이 칼이 아닌 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악플은 대체로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만 부정적 영향을 강하게 끼친다. 그것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 심각성을 알기가 어렵다. 악플을 읽는다 해도 그것이 본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이 아니면 기분은 나빠지겠지만 비수처럼 꽂히지는 않는다. 그래서 악플은 일반적인 대중의 삶에서는 그리 큰 관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누군가 악플의 대상이 되어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읽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황폐화될 수 있다. 온통 적으로 둘러싸여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이 ‘칼’과 같은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다.

글은 말에 비해 간접적이다. 글을 쓴 사람의 시점과 그 글을 읽는 사람의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글을 읽을 사람이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하고 ‘말’로 주고받는 면대면 상황의 험담이나 욕설에 비해 그 영향력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악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그 한 사람이 받게 되는 충격의 강도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높아진다.

인터넷이 발전하기 이전에 자기 공책에 휘갈기던 낙서는 그것이 아무리 거친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끝날 뿐 널리 유통되지 않았다. 따라서 타인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도 제한적이었다. 누구에게나 불만이 쌓여 그 대상에 대한 험담을 종이 한 장에 가득 써 놓았다 해도, 본인의 마음이 후련해지는 데 비해 다른 사람에게 가는 피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풀어놓는 한풀이식 낙서는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며,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어쩌면 악플을 다는 행위는 불만을 표출하는 형태의 ‘낙서’ 행위와 유사할 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러한 낙서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면 그 부정적인 여파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한 대상에게 ‘인터넷 낙서’의 쏟아놓기식 포화를 집중시키면, 그 대상은 심리적 상처를 피해 갈 곳이 없다. 악플러가 순간적으로 배출한 부정적인 감정이 누군가에게 견딜 수 없는 폭력이 된다면, 피해자의 인격권에 큰 침해가 발생하고, 심리적·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악성 댓글을 표현의 자유 범주 내에서 관대히 보아 넘기기는 어렵다.

흔히 인터넷을 ‘열린 공간’이라고 이야기한다. 열린 공간에서 왜 이처럼 사람들은 극도로 닫힌 마음의 상태를 표출하는 것일까. 궁극적으로 서로에 대한 소통 가능성을 더욱 닫아버리게 되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자리하고 있을까. 열린 공간에서 더욱 닫혀버린 사람들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악플, 그 악플의 심리 근간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먼저 악플의 일반적 원인을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한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문화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생각해 보려 한다.

2. 악플의 일반적 원인

(1) 익명성으로 인한 탈억제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 때 표현이 과격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익명성 때문이다. 누가 댓글

글을 달았는지 쉽게 밝혀내기 어렵다. 자기가 누구인지 실명을 밝히고, 이에 더해 사진까지 공개되는 상황이라면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인터넷상의 익명성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한다.
(출처: 『LA중앙일보』,
“‘날 알아보는 게 싫어요’ ...
익명·폐쇄성 새 트렌드”,
2015년 3월 27일자)

익명성의 가장 큰 효과는 충동적인 본능을 탈억제(Disinhibition)하게 만드는 데 있다. 즉, 보통 때는 사회의 규범과 집단의 압력, 본인의 체면 등을 생각하여 억제하고 있던 본능이 탈출구를 찾는 순간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데, 익명성이 탈억제 과정을 촉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익명성뿐만 아니라 음주도 탈억제 기능을 한다. 평소에는 조직의 규범 때문에 상사에 대한 불만 등을 억누르고 있다가, 술을 마시면 그렇게 억누르고 있던 충동이 마침내 탈억제되어 더욱 과감한 언행이 나오게 된다. 폭력적인 행동이나 과격한 언어 등이 탈억제를 통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알코올에 의한 것이든, 익명성에 의한 것이든, 억제되어 있던 분노나 욕구가 분출되어 나올 때, 이는 ‘근시안적’이라는 또 다른 특성을 지닌다. 즉,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만 주의를 기울여, 주변의 다른 상황이나 장기적인 관점이 보이지 않게 된다. 역으로, 시야를 조금 넓히거나 장기적인 안목을 찾으려 노력하면 분노나 근시안적 행위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익명성의 효과와 동전의 양면처럼 기능하는 특성이 바로 ‘인정 욕구’이다. 타인의 시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기가 드러나지 않을 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현상도 역

시 타인의 시선을 중요시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두 가지 모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소위 ‘갑질’(권력을 가진 ‘갑’의 입장에서 권력이 없는 ‘을’을 하대하는 행위를 통칭하여 사용하는 속어)이라는 부정적 행위로 나타날 수 있지만, 후자는 ‘악플’이라는 부정적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2) 순간적인 감정의 배설과 자존감 유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행동은 많은 생각을 거친 후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글을 읽었을 때, 혹은 글 전체를 읽지 않고 제목만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순간적인 감정의 표현은 거의 배설에 가깝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유형도 다양하다. 제목만 보거나 눈에 띄는 단어만 보고 떠오르는 감정을 생각 없이 쏟아놓는 사람, 평소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글을 보고 글의 내용과 무관하게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악플을 다는 사람, 또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소속감에 기대어 그 집단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동조하여 각종 악플을 달거나 퍼나르는 사람 등 그 유형은 다양하다. 그러나 어떤 유형의 악플러이든 대개는 ‘깊은 생각’ 없이 순간적인 감정을 마치 배설하듯 쏟아놓는다.

악플이라는 행위 자체가 감정에 기반을 둔 행위일 때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나 소속 집단의 정체성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 때 악플 행위는 더욱 심해진다. 자신과 소속 집단의 정체성을 방어해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신의 성취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전자보다 후자에 드는 노력이 더 적기에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일반적으로 후자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악성 댓글도 순간적인 반응으로서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를 깎아내리는 행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기가 속한 집단의 우월함을 입증함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기도 한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의할 때 자기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근거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성취를 높이거나 상대 집단의 성취를 깎아내림으로써 집단 자존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존감도 유지하려 한다.

이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도 지키려 하기 때문에,

악플을 다는 행위는 개인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순위에서 밀리면 그를 밀어낸 라이벌 가수에 대한 악플 달기가 성행할 수 있고, 이런 행위는 개인 대 개인의 차원이 아닌 팬클럽 대 팬클럽, 즉 집단 대 집단의 차원에서 퍼져 나갈 수 있다. 일종의 힘 겨루기, 세력 겨루기가 인터넷상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의 악플 달기는 주로 순간적인 감정의 배설에서 시작되지만, 집단적인 차원의 악플 달기는 집단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동조 행위와 함께 조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3) 스트레스의 배출구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악성 댓글을 많이 다는 경향을 보일까. 악플을 다는 행위는 일종의 공격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심리적 근원을 살펴보면 공격 행위는 대개 '좌절'을 느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좌절은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을 때 생긴다. 즉,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좌절을 느끼면 공격 욕구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비교적 쉽게 공격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글로라도 과격한 표현으로 쏘아붙이고 나면 웬지 잠시나마 후련해짐을 느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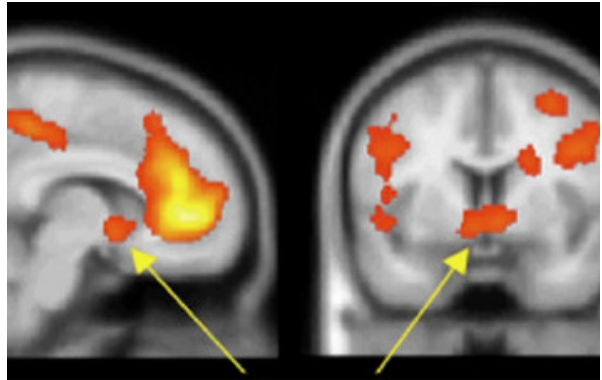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악성 댓글로 그 스트레스를 풀고자 할 가능성이 큰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스트레스나 좌절로 인한 분노를 발산할 희생양이 필요한 순간에 인터넷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공간에서 마음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어버리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디어이기에, 언제 어디서나 당장 자신의 감정을 표출시킬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된다. 더욱이 요즘은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로 이동 중에도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아주 날카로운 단점이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4) 쾌감을 주는 놀이, 주목을 끄는 수단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것은 거리낌 없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쾌감을 느낀다. 하버드대 신경생리학자인 타미르(Tamir)와 미첼(Mitchell)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돈이나 음식과 같은 보상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같다고 한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쾌감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
돈이나 음식과 같은 보상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일치하는 모습
(출처 : 『미국 국립과학원회보 PNAS (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



인터넷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놓는 것,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머리와 가슴 속에 떠오르는 생각들과 느낌들을 여과 없이 표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일종의 놀이로 간주될 수 있다. 자기 이야기와 느낌을 쏟아놓음으로써 보상을 느끼고, 또 자기 글의 영향력을 느끼면 쾌감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것이다.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이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어 따분하다고 느낄 때는 즐거우면서도 흥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극을 찾게 된다. 순하고 부드러운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 자극적인 언어로 표현을 할 때 흥분 수준이 더욱 높아진다.

일단 자극적인 언어나 거친 언어는 사람들의 주의집중 수준을 높인다. 본인이 그런 언어를 내뱉으면서 느끼게 되는 속 시원함과 쾌감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통 이상의 자극 수준을 유발하여 주목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언론도 최대한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려 노력하고, 광고 카피를 만들 때도 압축적이면서도 강렬하게 와 닿는 언어를 찾아내려 노력한다. 정치인들도 기왕이면 인상에 남는 말로 대중의 시선을 끌어들여 한다.

인터넷 서핑을 즐기며 여러 곳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도 이와 유사하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은 것이다. 기왕이면 자기가 쓴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클릭수가 증가하면 기뻐하고, 반응이 많고 빠르면 더욱 신이 나서 댓글 달기나 논쟁을 이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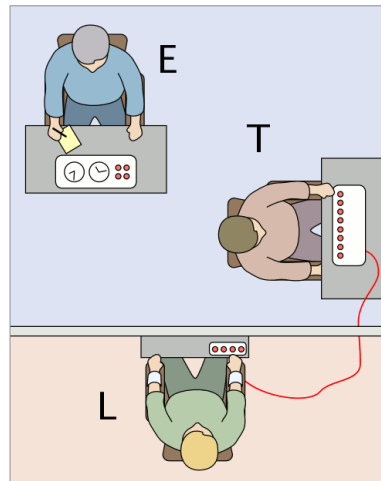
문제는 이러한 인터넷 논쟁이나 댓글의 표현이 이성적으로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때 발생한다. 신나게 자기표현을 하며 쾌감을 추구하고 뇌의 보상을 느끼는 가운데, 자신의 송곳 같은 표현이 누군가의 심장을 파고들기를 원한 나머지 악성 댓글의 범주에 속하는 글을 쏟아놓게 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을 ‘초토화’시키거나 ‘소탕’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말을 해 주고 나면 일시적으로 자기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느낌이 악플 행위로 나타나, 상대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용어를 찾아 표현하고는 통쾌해하기도 한다. 자신이 통쾌해 하는 만큼 상대방이 입는 마음의 상처가 커져 치유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쾌감을 주는 일종의 놀이로서 악플 달기를 즐기거나, 악성 댓글을 읽는 사람도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악플을 읽은 상대방의 반응을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악플 달기는 지극히 일방적이다. 오프라인상의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단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쏟아놓는 상황과 유사하다. 댓글도 일종의 소통 수단이므로,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댓글을 달 필요가 있다.

(5) 피해자의 고통을 대면하지 않는 구조

대체로 피해자의 상처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가해 정도가 더 심해진다. 사회심리학자 밀그램(Milgram)에게서 시작된 복종 실험들은, 윗사람의 명령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기충격을 가하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상황에서 상대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가 더 클수록 그런 행동의 강도가 더 세지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윗사람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방에 가스가 들어가도록 스위치를 작동시킨 독일인의 경우에도 가스실 안에서 고통 받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직접 보이지 않는 경우에 마음의 부담을 덜 느껴 더 쉽게 복종 행동을 한다.



● 밀그램의 복종 실험. E는 실험자(Experimenter), T는 교사(Teacher), L은 학생(Learner)이다. 교사가 피실험자에 해당하며 교사는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방에 있는 학생을 보지 못한다.
(출처 : 위키피디아)

악성 댓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쓴 악플을 읽고 상처받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더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크다. 학교폭력이 ‘카따’(‘카카오톡 왕따’의 줄임말)와 같은 형태의 SNS 폭력으로 변질되어 가면서, 가해자의 심적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피해자가 입는 마음의 상처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시사점도 필자의 연구 결과¹⁾에서 얻어졌다.

악플로 인한 피해는 가해자의 눈앞에서 직접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악플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아무리 험한 독설을 날리는 악플러라 하더라도 자신의 악플로 인해 상대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직접 본다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악플 행위의 강도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다. 자기가 하는 행동의 부정적 효과가 직접 눈앞에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으면 그 행동을 더욱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이 사람이다.

3. 악플의 문화적 원인

악성 댓글은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다. 악플은 인터넷 시대에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댓글 심리에는 다소 독특한 특성이 있다.

(1) 평소 규범의 영향력이 큰 문화

한국은 평소 규범의 영향력이 큰 문화이다. 전통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문화이기에, 크고 작은 집단 내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 많다. 명시적인 규범은 물론이려니와 암묵적인 규범까지 작용해 ‘웬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상황이 많다. 한 마디로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환경과 주변 사람들, 소속 집단 등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평소 규범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탈억제 상황에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못하고 마음 속으로 쌓아 두었다가, 술을 마신 후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나 험담을 쏟아놓는 행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될 때 나타나는 악플의 탈억제 효과도 한국처럼 강한 규범을 지닌 문화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1) 나은영 · 김은미 · 박소라, 2013,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공감능력 : 면대면, 음성 및 문자매체 따돌림 피해와 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7권 제6호, 606-635쪽.

평소의 억눌림 수준을 낮출 수 있다면, 탈억제되어도 쏟아져 나올 찌꺼기들이 적어 지므로 악플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누를수록 터져 나오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악플이다.

(2) 남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의 행동 차이가 큰 문화

한국인은 유난히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 남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의 행동 차이가 큰 문화이다. 사회적 시선을 중요시하는 것은 예의를 숭상하는 유교문화의 전통을 중요시해왔음을 뜻하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데 왜 타인에게 상처가 되는 악플을 남발하게 될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악플을 달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즉,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자기가 악플러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심한 악플을 달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 난폭운전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에 운전자의 이름을 크게 써 붙이는 것이 좋겠다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아이디어가 나온 적이 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는 행동을 가려서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난폭운전이나 악성 댓글과 같은 반사회적 공격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 남이 자신의 악행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 그런 악행은 더욱 확장될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미디어 환경 자체가 익명성을 전제로 많은 사람들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각양각색의 콘텐츠들을 자유자재로 유통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올리고 어떤 댓글을 다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익명성의 탈 뒤에서는 ‘남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일들이 더욱 증폭되어 나타나게 된다.

(3) 내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한 문화

한국 문화는 내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한 문화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그들’로 나눈 다음,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배분하고 ‘그들’에게는 덜 좋은 것을 배분하는 경향이 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한 반응도 그 행위자가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미국과 같은 개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악플의 특성 중 하나는 그것이 개인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악플의 내용에도 개인적 특성이 많이 나타난다. 이에 비해 한국의 악플은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악플의 내용에도 집단적 특성을 많이 보이

는 것이다. 대체로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의 글에 대해서는 가혹한 평가를 하지 않지만, 친분이 없거나 ‘저쪽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글에 대해서는 가혹한 평가를 하는 경향도 이와 관련이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악플의 영향을 받는 정도도 자신과의 관계가 멀수록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3자 효과가 나타난다. 중앙대 유홍식 교수의 2010년 한국방송학보 게재 논문²⁾을 보면, 응답자들은 악플의 영향이 응답자들 본인에게 가장 적고, 일반 성인에게 약간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가장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본인과의 사회적 거리에 따른 지각의 편향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즉, 자기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악플의 부정적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제3자 효과는 결국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 측면에서 ‘나보다 남이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와 더 ‘비슷한’ 사람일수록 이런 측면에서 더 ‘낯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넓혀 생각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악플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악플의 영향이 나에게도 크게 미친다고 생각하면 악플 퇴치, 선플 달기에 더욱 앞장서겠지만, 나에게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플의 심각성을 실제보다 더 약하게 생각하고, 따라서 사회적으로 더 적극적인 악플 퇴치 활동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나의 문제’가 되어야 비로소 노력을 들여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4)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큰 문화

한국의 문화 특성 중 하나는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크다는 점이다. 즉, 의견이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나와 다른 것’을 참아내는 정도, 또는 애매한 상태를 인내하는 정도가 약하다. 불확실성 수용 성향이 큰 문화에서는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낯선 것을 위험하게 바라보기보다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다름’에 대한 인내력이 약한 불확실성 회피 문화에서는 불확실성 수용 문화에 비해

2) 유홍식, 2010, “악성 댓글에 대한 제3자 효과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4집 제5호, 238-278쪽.

상대적으로 악성 댓글이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내 의견을 공격하는 것은 곧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기 힘들다. 그래서 의견이 다르면 더욱 필사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인터넷의 속성상, 더 나아가 인간의 속성상,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필요가 있다.

4. 악플을 줄이려면?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전은 사람들 사이의 연결과 공유를 촉진한다. 연결과 공유가 촉진될수록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더욱 행복해져야 하건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미디어를 통한 사람들 간의 연결이 많아질수록 자신에 대해, 혹은 자신의 글이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이 생각 없이, 또는 악의적으로 쏟아내는 악성 댓글을 더욱 많이 접하게 되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어떤 글이든지 금방 올릴 수 있고, 그에 대한 댓글도 바로바로 달 수 있고, 순식간에 대규모로 공유되는 현재의 모바일 인터넷 상황은 그야말로 양날의 칼이다. 잘 쓰면 사람을 살리는 외과의사의 칼이 되겠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너무나 쉽게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인터넷 댓글들이 날카로운 악성 댓글로 변하여 사람을 해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인터넷이나 모바일 미디어는 이미 너무나 보편화되어 이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 또한 ‘익명성’이 이러한 미디어의 핵심 특성 중 하나이기에 무조건 실명화를 촉구할 수도 없다. 결국 우리는 ‘늘 옆에 두고 더 붙어 살아가야 하는 미디어’라는 시각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옆에 인터넷 미디어를 두고 그 미디어와 함께 성장해 가는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미디어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미디어를 친절히 대하는 미디어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즉,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거치며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처럼, 미디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교육한다 해도 일부가 범죄자가 되는 것을 인류는 아직 막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미디어교육만으로는 악의적으로 댓글을 다는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일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과 유사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누가 악성 댓글을 다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익명을 보장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개개인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모습에 스스로의 인격이 투영된

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다. 흔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에 운전자의 인격이 나타난다고 말하기도 하듯이, 인터넷이나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사용하는 양태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미디어를 ‘쓰레기 처리장’ 썸으로 생각하고 감정의 배설 도구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미디어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는 고마운 도구라는 점을 습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일상의 삶 속에서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법이 몸에 배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과 타인의 말 하나, 글 하나의 소중함을 깨달을 기회가 필요하다. 생각 없이 말과 글을 쏟아놓기보다, 잠시 멈추고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거쳐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플의 수위도 낮아지고 악플의 비율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연결이 더욱 잘 될수록 미디어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기에, 미디어에 의견을 피력할 때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글을 작성할 때, 눈앞에서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고 말을 하듯이 좋은 언어를 골라 표현할 필요가 있다. 순간적으로 끓어오르는 부정적 감정을 한낱 기계에 내질러버리듯 표출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사람에게 글로 마음을 전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성옥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판결로 본 기사댓글의 법적 책임

1. 인터넷과 악성 댓글

(1) 인터넷의 이중성: 댓글과 악성 댓글

댓글은 ‘인터넷에 오른 원문에 대하여 짤막하게 답하여 올리는 글’을 의미한다. 댓글은 다양한 정보 공급원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¹⁾ 활발한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공토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²⁾ 또한 댓글은 쟁점에 대한 타인들의 의견을 살피고 여론을 지각할 수 있게 해준다.³⁾

그러나 댓글이 악성 댓글로 변하는 순간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욕설이나 비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⁴⁾ 논점이 어긋난 비판이나 인신공격으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경우도 많다.⁵⁾ 속의 민주주의를 위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인터넷은 오히려 의견 대립과 갈등, 반목으로 채워지기 쉽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댓글을 통해 여론 왜곡 현상까지 발생한다.

1) 임정수, 2007, “초기UCC 생산과 소비의 탈집중 현상,” 『한국방송학보』 제21권 제1호, 211~2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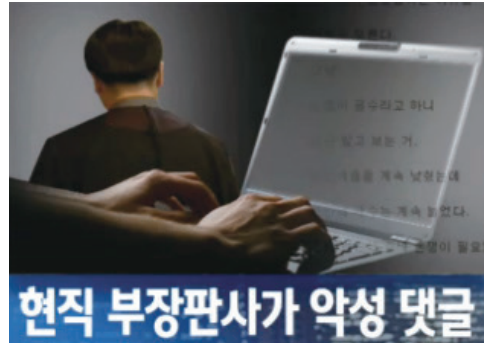
2) 김은미·선유화, 2006, “댓글에 대한 노출이 뉴스 수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제50권 제4호, 33~64쪽.

3) 정일권·김영석, 2006,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댓글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론 동향 지각과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31~650쪽, 한혜경, 2003, “인터넷 이용자의 여론 지각과 의견표현: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의 비교,” 『한국언론정보학보』 제23권, 189~222쪽.

4) 최영, 2006, “저널리즘 관점에서 본 시민 저널리즘,” 『언론중재』 제26권 제2호, 4~15쪽.

5) 성동규, 2007, “네티즌 댓글의 무분별한 인용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제27권 제1호, 98~105쪽.

지난 2월 현직 부장판사가 네이버, 다음 등에서 기사에 '악성 댓글' 1만여 건을 단 사실이 드러났다.
(출처: 『JTBC』, “상습적 악성 댓글 … 알고 보니 현직 부장판사가”, 2015년 2월 11일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자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했다.⁶⁾ 개방성, 쌍방향성, 동시성 등 인터넷의 기술적 특징에 따른 정의이다. 장점을 살려 인터넷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는 그 안을 채워나가는 우리의 몫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토론의 장으로 인터넷 댓글을 건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교육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댓글 한 줄이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터넷 기사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논의가 중요한 이유이다.

(2) 악성 댓글의 대상자

악성 댓글에 따른 피해는 2000년대 중반부터 주로 여성 연예인들이 대상이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2007년 가수 유니의 자살이 악플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같은 해 정다빈(텔런트), 김형은(개그우먼)의 죽음을 두고도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악성 댓글이 달려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다. 이후 고소영, 이영애, 송혜교, 이다해, 수지, 아이유, 백지영 등 유명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에 대해 적극 대응하면서 형사 고소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런 경우 수십 명의 네티즌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많다. 연예인과 관련된 악성 댓글은 결혼설, 임신설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인격모욕적인 발언,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까지 그 내용이 다양하고 이로 인한 당사자들의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

그러나 악성 댓글이 단지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2005년 ‘개똥녀 사건’의 경우,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바람에 당사자 얼굴이 공개됐고 당사

6) 헌법재판소(2002. 6. 27.) 99헌마480 결정

7) 윤성욱, 200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KBI Focus』 08-18호(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자는 마녀사냥을 당했다.⁸⁾ 2007년에는 한 여고생이 다이어트 성공사례로 방송에 출연한 이후 인기그룹 멤버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일반인도 손쉽게 악성 댓글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도 공인인 만큼 악성 댓글의 대상이 되기 쉽다. ‘회피 연아’ 사건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제의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네티즌을 고소한 사건이다. 문제의 동영상은 KBS의 뉴스 영상 일부를 편집한 것으로, 유 전 장관이 귀국한 김연아 선수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포옹하려 하자 김 선수가 이를 피하려 한 듯한 모습을 담고 있다.⁹⁾

또한 기업이나 제품, 상점도 악성 댓글의 대상이 된다.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주체들은 인터넷 악성 댓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미 경험한 소비자의 평가가 중요한 만큼 업계에서는 악성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잦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지분 인수계약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 사건,¹⁰⁾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결합에 대한 악성 댓글 사건 등에서 기업들이 각각 네티즌을 고소했다.¹¹⁾

악성 댓글의 대상은 과거 일부 연예인에서 최근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 일반인들까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지고 있다. 그런데 공인과 사인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악성 댓글 피해자로 판단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공인이라고 무조건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에 대해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기사댓글이 공적 사안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 관한 내용이거나 허위사실에 기반한 내용일 경우 공인도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인에게도 일반 사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인터넷에서 공적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정보유통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악성 댓글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서와 같이 공인인지 사인인지 그리고 공적 사안인지 사적 영역인지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 논의

세월호 사건 당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로 논

8) 개똥녀 사건은 2005년 한 여성이 애완견을 데리고 지하철에 탔다가 애완견이 설사를 했는데 지하철 바닥에 떨어진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으며 이슈가 된 사건이다.

9) 일부 네티즌이 이 영상을 인터넷에 띄우며 ‘유인촌의 굴욕’, ‘성추행’ 등의 설명을 함께 붙였다. 유 장관이 김연아를 껴안으려고 했다가 거부당한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10) 『연합뉴스』, 2011. 6. 30. “하나금융 김승우 회장 악플 누리꾼 고소,”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6/30/0301000000AKR201106302002000004.HTML>(검색일: 2015. 5. 14.)

11) 『이데일리』, 2014. 12. 11.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악플 강경 대응 나섰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11&newsid=03243926606317536&DCD=A00301&OutLnkChk=Y>(검색일: 2015. 5. 14.)

란의 중심에 섰던 홍○○ 씨가 3월 경 자신을 비방한 악플러 1,500여 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 들어 악성 댓글에 대한 대량 고소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대검찰청은 지난 4월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처벌가치가 미약한 경우 조사 없이 각하, 일회성 댓글이고 반성하며 댓글을 삭제한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한다. 반대로 합의금을 목적으로 다수인을 고소한 측에서 피고소인을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고소남용의 경우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다.

모욕죄 고소 사건은 2004년 2,225건에서 2014년 27,945건으로 12.5배 증가하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도 같은 기간 1,257건에서 7,086건으로 증가했다.¹²⁾ 대검찰청의 고소남용 처리방침은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기준을 다소 완화해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일각에선 악성 댓글의 증가 추이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처리방침이 악성 댓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인터넷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규제 입장은 크게 대립되어 왔다.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찬성 등 보다 더 엄중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에는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인터넷 속성상 형법의 모욕죄 처벌은 미약하므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자는 게 규제옹호론이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 도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여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형법의 모욕죄로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없고, 모욕죄 폐지

 대검찰청 형사부 검찰 대변인실 PROSECUTION SERVICE 전파 02 3480 2100 / 팩스 02 3480 2704	보 도 자 료 2015. 4. 자료문의 : 형사부 형사1과 전화번호 : 02-3480-2262 주책임자 : 형사1과장 한용재
제 목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 시행
● 인터넷·SNS 등 각종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소위 ‘악플’)을 게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 같은 ‘악플’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학교·사회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음 한편, 댓글 게시자 수백 명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고소제도 남용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상돈 검사장)는 ①모욕죄에 해당하는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정 처벌하되, ②고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각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③합의금을 목적으로 다수인을 고소한 측에서 피고소인을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마련, 2015. 4. 13.부터 시행함	

● 대검찰청의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 보도자료
(출처 : 대검찰청 홈페이지)

12)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 시행 보도자료,” 대검찰청 공식블로그 <http://spogood.tistory.com/263>(검색일: 2015. 5. 10.)

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규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형법상 모욕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3년 형법상 모욕죄가 위헌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다.¹³⁾

인터넷 규제는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자거나 무조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적인 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양자 간의 조화와 균형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우리 법원이 인터넷 기사댓글에 대해 어떻게 법리를 적용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2.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악성 댓글의 법적 책임

(1) 악성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법률

악성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및 모욕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07조는 일반 명예훼손, 제308조는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다루고 있다. 제311조는 모욕에 대한 규정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인터넷 기사댓글 관련 법제의 특징으로는 형법에 비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가중처벌 된다는 점,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 관련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참조).

〈표 1〉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처벌 조항

분류 허위사실 여부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	조항	요건	성격
일반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07조	공연성	반의사 불벌죄
사자의 명예훼손	규정 없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08조		친고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비방 목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09조		반의사 불벌죄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11조		친고죄

13) “간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이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 (후략)” [헌법재판소(2013. 6. 27.) 2012헌바37 결정]

〈표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관련 조항

분류 \ 처벌	자유형/자격형	벌금형	조항	성격
사실의 적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70조 제1항	반의사 불벌죄
허위사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70조 제2항	

(2) 악성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과 법원의 판단

이하에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 기준을 검토하였다.

① 악성 댓글의 공연성

명예훼손이나 모욕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된다. 법원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전파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한다.¹⁴⁾

따라서 개방적이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공간은 공연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¹⁵⁾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SNS, 1대 다수의 채팅방,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까지 공연성이 인정된다.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댓글은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¹⁶⁾

② 악성 댓글에서의 피해자 특정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우선 기사댓글에서 특정인 적시 문제는 ‘기사에 나타난 인물이 댓글에서도 명예훼손의 직접 대상자인가’, 아니면 ‘기사와 관련되어 주장을 달리하는 댓글작성자 간의 명예훼손 문제인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사에 나타난 인물이 댓글에서 명예훼손의 직접 대상자인 경우이다. 원 기사에 피해자가 특정이 되었든 그렇지 않은 기사와 그에 달린 댓글 등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기사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

14) 대법원(2006. 5. 25.) 2005도2049 판결

15) 주승희, 2009, “현행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최근 논의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593쪽.

16) 대법원(2008. 7. 10.) 2008도2422 판결

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법원은 그동안 피해자 특징에 대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판단해왔기 때문이다.¹⁷⁾

예를 들어 앞의 댓글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어 좋은 평가가 있었고 뒤이어 추가 게시된 댓글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 있었다면 해당 댓글에서 직접적으로 특정인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전후 댓글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둘째, 기사와 관련되어 댓글작성자 간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이다. 인터넷에서는 주로 실명보다는 아이디나 닉네임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현실적으로 인터넷에서는 아이디가 자신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호로 활용되며, 아이디를 통해 실존인물을 추론할 수 있는 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 된 후 동일 아이디로 활동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명예의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¹⁹⁾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인터넷 아이디만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네이버 기사에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는 무죄찬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댓글을 달았다. 그런데 이에 대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아이디를 지칭하며 “내가 당신 부모를 강간한 다음 주○○인 척하면 무죄 판결 받아야 한다는 뜻 같습니다.”는 등의 모욕적인 감정 표현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 청구인은 이들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²⁰⁾

위 사건의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밖의 주위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²¹⁾

17) 대법원(1982. 11. 9.) 82도1256 판결, 대법원(2002. 5. 10.) 2000다50213 판결 등

18) 서울중앙지법(2008. 9. 11.) 2008노1719 판결, 대법원(2008. 7. 10.) 2008도2422 판결 등

19) 강동범, 2007,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 47쪽.

20)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2006형제47728호)에서 수사한 후 불특정다수인에 의하여 고소인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없어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1) 헌법재판소(2008. 6. 26.) 2007헌마461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아직까지는 인터넷 아이디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아이디와 함께 다른 신상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③ 악성 댓글에서 사실의 적시와 주관적 의견·평가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의견 또는 논평이라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²²⁾

비리, 부정 등 의혹제기 방식으로 작성된 기사 원문에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 그러한 의혹을 사실인양 전제하고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는 기사와 무관하게 기사댓글이 연속적으로 게시되면서 어떠한 사실을 전제로 댓글을 달았다면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 기사에는 특정 연예인이 재벌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아준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추가로 “지고지순의 뜻이 뭘지나 아니?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댓글이 이루어지는 장소, 시기와 상황, 그 표현의 취지 등을 보았을 때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하여 허위 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²³⁾

나아가 주관적 평가가 주된 내용이더라도 특정 사실을 전제한 댓글의 경우 사실의 적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특정 성형외과를 가리켜 “가슴전문이라.... 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눈, 턱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결과가 좋지 못하다”, “눈 수술을 받았으나 지방제거를 잘못하여 모양이 이상해졌고, 다른 병원에서도 모두 이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경우에도 법원은 사실의 적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폭넓게 적용했다.²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구별된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 일부 견해는 명예감정이라고 하나 지배적인 견해는 명예훼손의 보호법익과 같

22) 대법원(2004. 2. 27.) 2001다53387 판결, 대법원(2002. 1. 2.) 2000다37524 판결, 대법원(2000. 7. 28.) 99다6203 판결 등

23) 대법원(2008. 7. 10.) 2008도2422 판결

24) 대법원(2009. 5. 28.) 2008도8812 판결

이 외부적 명예로 보고 있다.²⁵⁾ 따라서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²⁶⁾ “통일의 꽃 ○○○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인과응보, 사필귀정”, “잘 죽었다.” 등의 댓글을 단 경우 법원은 경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²⁷⁾

④ 악성 댓글에서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²⁸⁾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이란 널리 국가나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²⁹⁾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담은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부인하였다. 즉 “그 표현물이 전체적으로 보아 성형시술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³⁰⁾ 물론 이 사건에서는 댓글이 한 줄에 불과하고 내용 수위도 ‘수술 결과가 좋지 못하다.’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되었다. 성형시술을 받은 모든 이들이 그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5) 김현철, 2009, “사이버 모욕죄의 헌법적 쟁점,”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207쪽.

26) 대법원(2008. 7. 10.) 2008도1433 판결

27) 서울중앙지법(2006. 3. 10.) 2006고정885 판결

28)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9) 대법원(2003. 12. 26.) 2003도6036 판결, 대법원(2006. 8. 25.) 2006도648 판결 등

30) 대법원(2009. 5. 28.) 2008도8812 판결

3. 악성 댓글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포털사업자)의 법적 책임³¹⁾

(1) 악성 댓글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또는 명예가 훼손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삭제,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³²⁾

〈표 3〉 정보통신망법상 포털사이트 관련 조항

구 분	내 용	조 항
일반적인 의무사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 의무.	제44조 제2항
명예훼손 내용 삭제 및 반박 요청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 게재 요청할 수 있음.	제44조의2 제1항
삭제, 임시조치 의무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함. 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 등에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함.	제44조의2 제2항
임시차단 (30일 제한)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이러한 임시조치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음.	제44조의2 제4항
약관 명시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내용·절차 등을 포함 약관에 명시하도록 의무.	제44조의2 제5항
책임 경감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음.	제44조의2 제6항

31) 포털사이트와 같은 사업자를 해외에서는 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라고 지칭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라고 지칭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 내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라는 용어로 통일한다. 서비스가 단지 기술적 서비스 뿐 아니라 정보 서비스도 포함한다는 중립적인 개념이라는 판단에서이다.

32)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44조의2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00년대 이후 법원은 포털사이트의 법적 책임에 대해 피해자의 삭제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다. 예를 들어 가수 박지윤의 팬이었던 원고가 하이텔 공개게시판에 비방 글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하이텔은 이를 삭제하지 않고 글의 게시자에게 경고메일을 발송하였을 뿐 5~6개월 동안 방치한 데 대해 법원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했다.³³⁾

그러나 2008년에는 게시물 삭제 요청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포털사이트는 삭제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원고가 교제 중인 여성을 두 번이나 임신시킨 후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강요하였고, 그 충격으로 애인이 자살하였다는 내용 등의 기사가 포털사이트 뉴스란에 게시된 후 댓글 등으로 원고에 대한 신상정보가 밝혀지고 비난이 확산되면서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등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즉 포털사이트는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란 ① 피해자가 사적 존재이고 ② 게시물의 내용이 명예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며 ③ 사적인 생활영역을 폭로하는 것에 불과하여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전혀 공공성, 사회성 없이) ④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방법이 무례한 정도를 넘어 심한 모멸적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인 경우 등이다.³⁴⁾

삭제 요청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포털사이트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이러한 입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적 검열을 허용함으로써 인터넷상의 표현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이 ‘삭제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포털사이트의 책임’이라는 단순 접근이 아니라 ‘명백히 불법적인 내용인지’, ‘인지하였는지’, ‘대응태도’, ‘사이트의 성격’, ‘삭제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터넷에서 타인의 권리가 손쉽게 침해되지 않도록 포털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33) 서울지법(1998. 8. 18.) 99가소83281 판결, 서울지법(2001. 4. 27.) 99나74113 판결, 대법원(2001. 9. 7.) 2001다36801 판결 등

34) 대법원(2009. 4. 16.) 2008다53812 판결

4. 나가면서

커뮤니티, 메일, 게시판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 중에서도 기사댓글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공론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건강해야 할 공론장이 정작 비방, 욕설, 인신공격, 갈등, 반목으로 얼룩진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는 그 공간을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관리 감독하고 대신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인터넷 기사댓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기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법리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공연성, 피해자 특정, 사실의 적시와 주관적 의견·평가, 비방할 목적 등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은 동일하다.

다만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기사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 쟁점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사업자에게 관리감독의 의무를 무겁게 부여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선한 사마리아인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업자가 비교적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나 아직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고 향후 법리가 축적되어 간다는 측면에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실명제, 사이버모욕죄부터 최근의 악성 댓글과 관련된 고소남용 처리방안까지 규제강화론자와 규제완화·폐지론자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그런데 논의가 다소 개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냄비여론처럼 접근되는 경향도 있다. 인터넷 명예훼손 법제를 두고 세계 각국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보편적 기준을 마련해 공조해나가려는 국외의 노력이나 움직임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비방이나 욕설, 인신공격 등 기사댓글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해 보인다. 기사댓글이 기사에 달린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사에 대한 언론조정 시 함께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기사댓글의 법적 책임과 함께 위법한 댓글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세월호 언론 참사, ‘1막’과 ‘2막’에서 끝나야 한다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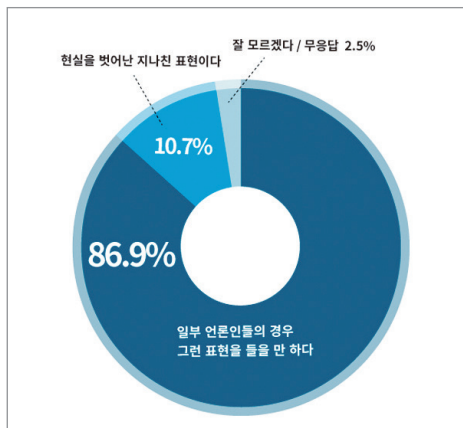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지, 언론인은 어떤 기준에 따라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모든 이의 관심사가 되었다. 문제적 언론인을 통칭해 ‘기레기’라고 부른 일은 언론인에게 특히 큰 충격을 주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가리켜 ‘세월호 언론 참사’라고 부르기도 했다.

언론보도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예 기사를 쓰레기에 비유해 기레기라고 부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 필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보도를 적지 않게 접했지만 기자 집단 전체를 가리켜 기레기라고 비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집단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 통쾌할지는 모르지만 상

황을 개선하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기자들이 이런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젊은 기자일수록 이런 지적을 더 실감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미디어오늘』이 지난 5월 전국 언론사 평기자 122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일부 언론인들을 기레기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0.7%가 “지나친 표현”이라고 답한 반면 무려 86.9%가 “일부 언론인들의 경우 그런 표현을 들을 만하다.”고 답했다.¹⁾

1) 『미디어오늘』, 2015. 5. 19. 장슬기,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뉴스는 SBS·JTBC·YTN 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192>(검색일: 2015. 5. 20.)



미디어오늘 · 사회동향연구소 공동 조사 결과
(출처: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뉴스는 SBS · JTBC · YTN 순”, 2015년 5월 19일자)

실제로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현장 기자들이 반성문을 썼다. 개인적으로 반성문을 SNS에 올린 기자들도 있었고, 기수별 반성문을 낸 KBS 기자들처럼 집단적인 반성문을 공개한 경우도 더러 있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자체 연구 조직인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산하에 ‘재난보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세월호 관련 방송뉴스를 연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방송기자들 전체의 반성문인 셈이다.²⁾ 세월호 언론 참사의 원인으로 여러 측면을 지적했으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역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부족과 권력에 대한 비판적 접근 태도의 부재였다. 언론보도가 지향해야 할 본질적 가치와 함께 언론이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에 근거한 분석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언론 참사는 이렇게 1막으

로 끝난 게 아니었다. 세월호 참사가 점차 정치 공방의 영역으로 빠져들 즈음 구원과 쪽에서 무더기로 언론조정을 신청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 초기에 기자들을 통째로 ‘기레기’라고 부르며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은 주로 희생자 유족이나 이들에 대한 구조 작업을 애타게 지켜봤던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언론을 상대로 법절차를 동원해 대규모 공세를 벌인 것은 구원과 쪽이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에만 구원과 측에서 수백 개의 매체를 대상으로 1만 6천여 건의 조정신청을 냈다.³⁾ 최근 수년 동안 연간 조정신청 건수가 2천 2백~2천 4백여 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짐작이 간다. 2015년 들어 추가로 제기된 것도 적지 않다. 조정신청 폭탄에 대응하느라 언론도 힘들었지만 이를 처리한 언론중재위원회도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한다. 어쨌든 구원과 측에서는 아무런 비용 부담도 없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신청해 언론을 압박했다.

언론 참사 2막의 시작은 세월호 참사 초기 보도와 관련해 다양한 반성문을 내놓았던 언론이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은 행태를 보인 점이었다. 언론은 세월호 참사 초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기초를 바

2)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특위 재난보도 연구분과, 2014, 『세월호 보도 ... 저널리즘의 침몰: 재난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 김동규, 2015, “언론조정을 통해 본 세월호 보도,” 『언론중재』 제35권 제1호, 6-17쪽.

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내 이 사건을 그렇고 그런 우리 사회의 갈등적 사건 중 하나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사안의 본질을 파고들기보다는 표면적인 대립 구도로 사건을 다루는 것이 몸에 익어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모든 관심이 유병언 일가 추적에 집중됐고,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미확인 정보들이 여과없이 보도됐다. 이 과정에서 냉정함을 유지한 언론을 찾기는 쉽지 않았고, 이것이 무더기 조정신청의 발단이 됐다.

구원과 측의 조정신청에 대응하는 언론의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물론 개별적으로 사건 처리를 맡았던 사람들은 다들 나름 성실하게 임했고, 상당한 분량의 조정신청은 적절하게 처리됐다. 하지만 언론조정 사건을 대하는 언론계 전반의 기본적 태도에는 아무런 발전과 반성이 없었다.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쟁점이 된 보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하고 잘못이 있다면 해당 사안에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향후 같은 방식의 보도를 하지 않도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이 잘못인지를 정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만 급급한 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언론 보도가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정당한 보도 행위까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조정 사례가 쌓이면 앞으로의 다른 보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번처럼 여러 언론이 한꺼번에 조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일부 언론의 태도는 유사한 다른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단순히 눈앞의 한 사건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론이 보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보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조정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언론이 해당 사건의 의미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도가 항상 원칙과 기준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처리도 비슷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언론사들 대부분 이런 일을 전담하는 인력을 두지 못하고 있고, 조정사건의 당사자가 된 언론인들은 혹시 소송으로 이어질까 두려워한 나머지 손해배상 요구만 없다면 적당히 종결짓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번처럼 유사한 사건들을 놓고 무더기로 조정신청이 접수된 상황은 좀 달랐어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기레기라는 비난까지 들어가며 뭔가 새로운 모습을 약속한 상황이었던, 적어도 이번에는 각자의 보도 관행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확실히 고치고, 반대로 앞으로 그런 보도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신청인과 언론중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

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번처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언론보도에 필요한 사실 확인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사생활이나 초상권 보호의 범위나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그러지 못했고, 결국 우리 사회와 언론은 세월호 언론 참사 2막에서도 별로 교훈을 얻지 못했다. 심지어 소송의 불편을 피할 수 있다면 언론조정 과정에서 수백만 원 대의 손해배상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는 언론들도 있었다. 언론조정과 소송을 겪더라도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자세가 없이는 언론보도의 기준을 사회적으로 확립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 언론에 이렇게 성숙하고 책임 있는 접근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무리였을까.

어떤 이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가 핵심인 언론조정 과정에서는 이런 원칙적인 접근 대신 신속하게 합의와 조정이 이뤄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언론 피해자들의 인격권 보호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각종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은 민주주의 사회의 운영과 유지에 핵심적이다.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개인이나 기관 등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언론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인격권의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속한 피해구제도 중요한 일이지만 언론으로서의 무엇보다 보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 수행하는 길이다. 평소 보도는 원칙 없이 하고, 누가 문제제기를 하면 그때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앞세워 역시 무원칙하게 분쟁을 마무리하는 데만 앞장서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다. 이번에 언론조정 폭탄을 불러온 것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구 보도하고 심지어 다른 언론보도를 확인 없이 베껴 쓰는 언론의 잘못된 행태였다.⁴⁾ 이렇게 언론이 무차별적 보도를 하다 막상 언론조정 공세가 몰려올 때 사건 처리에 급급하다면 무엇으로 포장하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언론 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활동은 그 자체로 대단히 공익적이고 사회적 책임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언론을 둘러싼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조금이라도 더 여력이 있는 곳부터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분명한 것은 언론 대신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이다.

4) 『한겨레』, 2014. 12. 15. 황용석, “구원파와 언론중재신청 ‘폭탄’,” <http://multihani.hani.co.kr/arti/society/media/669186.html>(검색일: 2015. 5. 20.)

누구를 위해 언론은 보도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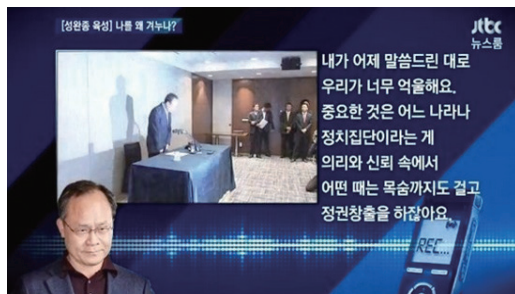
언론 윤리와 JTBC 성완중 인터뷰 녹음파일 방송 논란



양재규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콘텐츠팀장

JTBC에 쏟아진 비판

생각했던 것보다 관련 기사가 많지 않았다. 다름 아니라, 지난 4월 15일 방송된 JTBC의 고 성완중 경남기업 회장 인터뷰 녹음파일 보도 논란, 줄여서 'JTBC 녹음파일 방송'을 두고 하는 말이다.



JTBC의 고 성완중 회장
인터뷰 녹음파일 보도화면
(출처 : 『JTBC』 <뉴스룸>,
2015년 4월 15일자)

일부 매체에서 비중 있게 다루긴 했다. 우리나라 기자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한국기자협회에서 발간하는 기자협회보가 관련 기사 8건을 냈고, 미디어 비평을 전문으로 하는 미디어오늘 역시 같은 수의 기사로 이번 사건을 다뤘다. 물론, 가장 많은 수의 기사를 낸 것은 직접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경향신문이다. 경향신문은 아래의 기사를 포함한 총 10건의 기사에서 JTBC와 손석희 사장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취재윤리? 어겼다. 남의 것을 훔치고 가로채면 안 된다는 단순한 사실을 논하기 위해 언론학까지 들먹일 필요는 없다. 보도의 공익성, 다시 말해 JTBC의 7시간 전 육성 보도로 새롭게 얻게 되는 진실은? 아무리 봐도, 없다.

(4월 24일자 『경향신문』 내가 알던 손석희 맞나?)

비단 경향신문 기사가 아니더라도 관련 기사들의 논조는 대체로 JTBC 보도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비판적이었다. 이런 면에서 4월 23일자 미디어오늘에 실린 박중언 한겨레신문 디지털에디터의 “손석희를 위한 변명… 욕먹더라도 공개하는 게 맞았다” 제하의 기고는 이례적으로 JTBC 보도에 긍정적이었다.

언론 본연의 책무가 국민들이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도록 돕는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손석희에 대해 일방적으로 돌을 던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내 생각이다. 언론사 간 도의를 훼손한 부도덕한 행위이지만, 공익 측면에선 음성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 욕심을 줄이고 경향신문의 전문 공개 이후에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라면 하는 것이 사후에 얻는 교훈이 아닐까 싶다.

(4월 23일자 『미디어오늘』 손석희를 위한 변명… 욕먹더라도 공개하는 게 맞았다)

기자협회보, 미디어오늘, 경향신문 이들 세 개 매체 외에도 관련 기사를 낸 언론사들은 더 있다. 독특한 관점의 기사도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 논란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경향신문과 JTBC의 입장을 중개하는 수준이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언론들에게 이 문제는 처음부터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다.

한편, 다소 의외라고 여겨지는 상황도 연출되었다. 녹음파일 방송 이후 JTBC와는 척을 지고 법적 대응에까지 나설 것 같았던 성 회장 측 유족은 JTBC 기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 인터뷰는 5월 19일 JTBC 뉴스 시간에 방송되었다.¹⁾ JTBC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JTBC를 상대로 예고되었던 소송이나 고소 또한 아직 제기되지 않고 있다.

문제의 4월 15일자 방송 직후에는 온통 JTBC와 손석희 사장을 성토했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는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일까. 시간이 약이라고 그 사이 상처가 아물 듯 자연적인 치유가 이뤄진 것인지, 언론에서 다뤄야 할 좀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에 파묻힌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별문제가 아니었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무엇을 비판했나?

JTBC 녹음파일 방송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바로 법적 관점과 윤리적 관점이다. 법적 관점부터 살펴보자.

이번 사안은 명예훼손, 음성권 침해와 같은 전형적인 언론분쟁 이슈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임을 전제로 JTBC가 이번 녹음파일 방송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첫째, 성 회장은 공인으로서 인격권 분쟁에 있어서는 사인과 다르게 취급된다. 보통 육성 공개에 있어서는 인격권의 일종인 ‘음성권’ 침해가 문제된다. 또, 유족 입장에서는 고인에 대한 ‘추모감정’ 또는 ‘명예감정’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권리 침해 주장 모두 설득력이 크지 않다. 성 회장이 ‘공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까지 국회의원이었고, 검찰의 수사 대상인 기업의 대표로서 이 사건 보도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다수 언론보도에서 성 회장을 단순히 건설사 대표로서만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다행히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성 회장을 ‘전 국회의원’이라고 표시하기도 했다. 성 회장의 공인성을 보다 명백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 행태라고 생각한다.

1) 성 회장의 장남 성승훈 씨가 JTBC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경남기업의 ‘랜드마크72’ 매각 관련 의혹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JTBC, 2015. 5. 19. 박영우, “[인터뷰] 성완중 장남 “반기상 부자, 의혹 제기하면 반 총장 언급””,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891976(검색일: 2015. 5. 20.)].

공인은 일반인과 달리 인격권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육성 그대로 공개되었다고 해서 음성권 침해가 성립될 여지는 희박하다. 이것은 현재 다수의 언론에서 성 회장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에 자주 사용하는 것과도 통한다. 고인의 초상 사용이 이처럼 폭넓게 가능한 것은 당사자가 일반인이 아닌, 공인이기 때문이다. 성 회장의 공인성은 인격권 침해 판단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라 할 것이다.

둘째, 당사자의 공인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사안에서는 당사자의 공개 의사도 고려되어야 한다. 성 회장은 자신의 주장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간절히 원했다. 물론, 이 공개 동의 의사에 ‘육성’ 그대로 공개하는 것까지 포함되는지는 다소 불확실하다. 또, 경향신문이 아닌 다른 언론사에 의한 공개까지도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전후 맥락을 놓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어쨌거나,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이 공개되기를 원했고 이것은 공인성 여부와 더불어 공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족의 공개 반대는 이 사안에서 핵심적인 사항이 될 수 없다. 관련 규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²⁾)에 따르면, 고인의 인격적 처분과 관련한 동의는 유족 전원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생전에 당사자의 공개에 관한 확고한 의지 내지는 의사가 있었다. 유족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나 인격권 주체인 고인의 확고한 의사가 있는 경우, 그에 어긋나는 유족의 의사나 결정은 부차적인 사항이 된다.

고인의 육성 공개에 따른 유족의 고인에 대한 추모감정, 명예감정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초상마저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성 공개에 따른 추모감정, 명예감정 침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셋째, 이번 사안은 그 자체로 매우 공공성이 큰, 공적 관심사다. 수사가 진행 중인, 현재진행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 정부나 이전 정부의 도덕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한다.

③ 제2항의 유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그 유족이 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④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의 유족 전원이 하여야 한다.

성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 대화 내용이 공개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대화 내용 이외에 육성 그 대로를 공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적 가치(현장감, 사실성, 절박감, 당사자의 진정성 및 이 모든 것을 통해 전달되는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도 있을 것이다.

넷째, 방송 매체의 특성상 대화 내용 이외에 음성 파일 공개 또한 필요했을 것이다. 이번 사안에서 육성 그대로를 내보낸 것을 탓한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방송에서의 수많은 대화 음성 공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과거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비실명 요약보도’로 충분함에도 ‘실명 육성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영광 편집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상황이 종료된 지 무려 7~8년이 경과된 후 보도되었고 이러한 시간적 간극을 이유로 법원은 실명 육성보도를 내보낼 만큼의 ‘비상한 공적 관심사’는 아니라고 보았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안은 과거 ‘안기부 X파일’ 때와는 다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고 당사자가 죽음으로써 호소한 만큼 실제적 진실의 규명이 절실하기에 사건의 추이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JTBC의 적극적인 보도를 문제삼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녹음파일의 입수 경위에도 법적인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녹음파일의 사본을 넘긴 행위 자체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나 ‘공용서류 등의 무효’(제141조)에 해당될 가능성도 없으며 녹음파일을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파일의 복사본을 제3자를 통해 취득한 것을 절도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여섯째, 보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높지 않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이번 사안은 내용상 매우 공공성이 강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서 성 회장 개인의 동의 의사에서만 공개의 정당성 근거를 찾을 필요는 없다. 만일 현 정부 실세들에 대한 로비 내용이 담긴 제3의 인물과의 대화 내용을 다른 언론에서 입수했다고 할 경우, 과연 누가 당사자의 동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개하지 않겠는가? 그건 기대가능성이 희박한 가정이다. 이런 점에서 해당 녹음파일을 ‘공공재’라고 표현한 JTBC의 입장은 사안의 공공성 및 이를 뒷받침해주는 핵심적인 자료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사적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미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이 지났고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 조치 또한 취해진 바 없다. 그러므로 JTBC의 법적 책임 유무를 두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은 윤리적 관점이다. JTBC 음성파일 방송 논란에서 무엇인가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윤리적 관점이 보다 적합하다고 본다. 언론에서도 이번 논란을 주로 윤리적 관점으로 접근했다. 윤리적 관점에서 논의된 JTBC 녹음파일 방송의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개 단어, 즉 ‘도용’, ‘부동의’, ‘이중잣대’, ‘시청률’ 그리고 ‘속보경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도용’부터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경향신문은 손석희 사장에게 묻고 싶다. 성 전 회장의 인터뷰 파일을 훔쳐 방송하는 것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가.

(4월 21일자 「경향신문」 JTBC의 '언론윤리 훼손'에 대한 경향신문 기자들의 입장)

‘도용’은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법률용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기사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형법상 ‘절도’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JTBC의 보도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규정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JTBC의 녹음파일 방송을 ‘절도’, ‘도둑질’, ‘날치기’, ‘가로채기’ 등으로 보는 시각은 여러 건의 기사에서 폭넓게 발견되는데 이러한 비판의 중심에는 해당 녹음파일이 JTBC의 것이 아닌, 경향신문의 것이라는 관념이 있겠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취재도 노동의 결과인 만큼 타인의 결실을 익명으로 가져오는 것은 ‘노동 착취’행위”라면서 “대부분 조직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특히 강자가 약자를 상대로 취하는 행태가 도드라진다. 저널리즘의 실천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속도 경쟁의 산물이며, 국민의 알 권리나 진실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4월 22일자 「기자협회보」 베껴쓰기 등 취재윤리 위반 도 넘어)

다음으로, JTBC 보도가 맹비판을 받게 된 배경에는 고 성완중 회장의 유족 측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관련 기사에서는 ‘무단 공개’,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중단 요청’, ‘유족의 반대’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고 실제로 JTBC의 녹음파일 방송에 유족 측의 동의는 없었다.

성 전 의원의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성 전 의원의 장남 승훈씨는 JTBC보도국에 전화를 걸어 “고인의 육성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방송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고, 박래웅 경향신문 편집국장도 방송 직전 오병상 JTBC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유족들이 녹음파일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며 방영 중단을 요구했다.

(4월 15일자 『미디어오늘』 JTBC 성완중 녹취 공개에 경향신문 “법적대응할 것”)

유족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과 관련, JTBC에 대한 윤리적 비판은 ‘이중잣대’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JTBC가 빛났던 것은 끊임없이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을 지켜온 성실함과 진정성 때문이었다. 참사의 아픔을 “경쟁하듯 보도”하는 “언론의 속성”으로부터 JTBC는 자유롭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손석희 사장과 JTBC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4월 21일자 『기자협회보』 ‘신뢰의 손석희’ 변명 뒤에 숨다)

세월호 피해자 유족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던 JTBC가 이번에는 유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³⁾

또 이번 JTBC 녹음파일 방송이 다소 무리였음을 전제로 그 원인을 ‘시청률’과 ‘속보경쟁’에서 찾는 견해도 우세했다.

3) 이러한 비판이 정당하려면 세월호 유족과 성 회장의 유족을 동일선상에 놓아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두 부류의 유족이 다르다는 것은 굳이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성 회장은 공인이고 세월호 희생자는 일반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중잣대 논란은 적절한 지적이 아니라고 본다.

반응은 냉담했다. 결국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무리한 속보 경쟁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17일 사설을 통해 “무분별한 속보 경쟁이거나 특종을 가로채기 위한 무리수일 뿐”이라고 일갈했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지나친 시청률 경쟁 때문에 생긴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4월 21일자 『기자협회보』 ‘신뢰의 손석희’ 변명 뒤에 숨다)

녹음파일 방송이 나갔던 4월 15일 뉴스를 2부 시간대 JTBC 시청률은 전날(2.65%)에 비해 크게 오른 4.29%를 찍었다고 한다. 또, 다음 날 아침 경향신문에 녹취록 전문이 실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JTBC가 급히 방송을 내느라 자막에 오타가 많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JTBC의 15일자 녹음파일 공개는 매우 다급해보였다. 자막에 오타가 많았다. 손석희 사장은 방송에서 “굉장히 늦게 이 자료를 입수해 급하게 제작해서 한두 군데 오타가 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양해를 좀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4월 17일자 『미디어오늘』 JTBC, 성완종 경향 인터뷰 이유 생각해봤을까)

윤리적 비판은 타당했을까?

지금까지 JTBC에 쏟아진 비판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과연 이러한 비판들은 타당했나? 사실 이러한 윤리적 비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적 판단은 그래도 법 규정이라든가, 판례와 같이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윤리적 판단과 관련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언론 윤리라는 것을 아예 부정할 생각이 아니라면 다음의 문장이 윤리적 판단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리적 결정의 핵심은 자신의 충성 대상이 무엇이며 그것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하버드대 교수였던 조사이어 로이스(Josiah Royce)는 ‘충성심’(Loyalty)을 유일한 윤리적 원칙으로 보았다. 물론, 이러한 로이스의 주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목적과 주장에 대한 충성까지 용납하게 될 수 있으며 상충하는 충성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⁴⁾ 그러나 윤리적 결정의 핵심을 충성심으로 본 로이스의 견해는 윤리적 판단에 대한 나름의 의미 있는 통찰을 제시한다.



충성심을 윤리적 원칙으로
삼은 조사이어 로이스
(출처 : 위키피디아)

윤리적 비판은 충성심, 곧 충성할 대상에 대한 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해, 충성할 대상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충돌하는 의무들 사이에서 균형있는 적절한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 비판이 가해지는 것이다.

다시 JTBC 사례로 돌아가 살펴보자. JTBC의 녹음파일 방송에 대해 가해졌던 윤리적 비판은 충성 대상에 따라 재분류가 가능하다. 여기서의 충성 대상은 경쟁사, 취재원, 그리고 언론사 사주다.

먼저, JTBC에 가해진 ‘도용’ 비판은 경쟁사이자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다른 언론사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부동의’, ‘이중잣대’ 비판은 언론이 취재원에 대해 갖는 윤리적 의무와 연관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청률’, ‘속보 경쟁’은 언론사 사주에 대한 충성 문제다. 이렇게만 보면 JTBC는 경쟁사나 취재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사주에 대해서만 충성한 셈이 된다. 윤리적 결정의 핵심을 충성심으로 파악했던 로이스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오직 기삿거

4) Patterson, P. and L. Wilkins, 2013, 『미디어 윤리의 이론과 실제』, 장하웅 역(한울아카데미), 142쪽.

리를 얻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언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⁵⁾

그런데 이 지점에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다. 과연 언론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경쟁사나 취재원, 사주가 전부일까? 누구를 위해 언론은 보도를 하는가? 중요한 충성의 대상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 바로 독자 내지는 시청자에 대한 언론의 충성의무 말이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JTBC에 대해 쏟아졌던 윤리적 비판에서 독자나 시청자에 대한 언론의 충성의무는 뒷전이 아니었나 싶다.

이쯤에서 각자 자신을 틀 지우고 있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직업윤리를 점검해 보자. 가장 강하게 반영된 항목은 어느 것인지 그리고 사적인 이익과 미래의 보장을 위해 유보해버린 항목은 어느 것인지 생각해 보자.

(5월 6일자 「기자협회보」 저널리스트와 직업윤리)

이 칼럼을 쓴 변상욱 CBS 콘텐츠본부장은 기자의 직업적 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기자 개인의 양심이다. 둘째는 주된 독자층 혹은 시청자이며, 셋째는 소속 언론사, 넷째는 동료, 다섯째는 사회에 대한 공적 책무다. 이 모든 요소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기자는 세상에 존재할 것 같지 않다. 충성해야 할 대상은 여럿이고 충성의 방향은 엇갈리고 충돌한다. 결국, 선택의 문제가 남는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여기서 언론인 각자가 취하고 있는 윤리적 기준이 적용·발휘된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언론인들에게 의무가 상충하는 지점에서 일반 독자나 시청자보다는 소수의 유력 취재원에 대한 충성 의무가, 또 사회에 대한 공적 책무보다는 동료 집단에 대한 책무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든다.

지난 2월 한 종편 프로그램 앵커는 방송 진행 도중 타사 기자에 대해 ‘쓰레기’라는 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후보가 사석에서 기자들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을 모 기자가 정치권에 넘겼다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이 기자의 행동을 문제시한 것은 비단

5) Patterson, P. and L. Wilkins(2013), 140쪽.

종편 앵커만은 아니었다. 당시 많은 언론보도에서 한국일보 기자의 행동을 두고 언론 윤리 위반 혹은 실정법 위반 등을 거론했다. 심지어, 해당 기자가 소속된 신문사는 “취재윤리에 대해 별다른 고민 없이 파일을 제공했다.”며 사과문까지 냈다.⁶⁾ 언론의 이런 식의 반응을 전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 기자들에 대한 고급 취재원들의 경계심이 강해져서 당장 취재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목전의 불의한 현실만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이 기자 일반에 가져올 장기적인 파장을 고려하지 못한 ‘동료’ 기자의 선부른 행동에 부아가 치밀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녹음파일을 정치권에 넘긴 해당 기자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을 통해 녹음파일을 전달받은 KBS는 특종을 냈고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기자상’까지 받았다.⁷⁾ 녹음파일을 정치권에 넘긴 기자의 행동은 동료 기자나 소속 언론사에 대한 충성의무는 저버린 것일 수 있지만 독자나 시청자, 나아가 사회에 대한 언론의 충성의무에는 부합하는 것이었다. 기자로서 정말 걱정해야 하는 것은 취재원과의 신뢰 위반이 아니라 독자나 시청자, 나아가 알 권리의 주체인 국민과의 신뢰 위반이 아닐까.⁸⁾

흔히 기자들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위해 몰래카메라나 불법도청과 같은 다소 무리한 수단과 방법까지도 동원하곤 한다. 위법하거나 비윤리적일 수 있음에도 이런 보도에 대해 윤리적 비판은 가하지 않으며 심지어 불가피한 취재기법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또, 취재원이 내건 오프더레코드, 엠바고 요청을 깨기도 한다. 단지 상업적 동기 때문이 아니라 독자나 시청자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 경우 역시 비판거리가 아니다. 이러한 태도의 근저에는 기자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취재원이거나 동료 기자가 아니라 일반 독자나 시청자로 대변되는 사회에 대한 공적 책무라는 의식이 깔려있다.

6) 『한국일보』, 2015. 2. 10. 1면, “이완구 총리후보 녹취록 공개파문 관련 본보 입장”

7) 『기자협회보』, 2015. 3. 24. 강아영, “이완구 총리 후보자, 언론 외압 발언 보도” 등 4편 선정. 제294회 이달의 기자상,”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6067>(검색일: 2015. 5. 10.)

8) 양재규, 2015, “사생활 침해 · 명예훼손 · 도청” 해당 안 돼,” 『신문과방송』 제532호, 25쪽.

‘성완중 게이트’에는 내로라하는 등장인물이 즐비하고, 논란거리도 많아 무엇이 뿌리고 걸가지인지 단단히 챙겨보지 않으면 본질이 실종되기 쉽다. 그 본질은 딱 하나, 권력형 부정비리다. 진상을 파헤치다보면 비자금, 뇌물, 분식 같은 경영비리 등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겠지만, MB 정부의 부패한 자원외교의 떡고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성완중과 그와 유착된 권력자들의 실체가 무엇인가가 핵심이다. 권력형 비리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소중한 국고를 얼마나 허비했는지를 밝히고 재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언론이 늘 주장하는 본연의 자세이자 공공성이다. 손석희를 단죄하는 핵심적 기준 또한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

(4월 23일자 『미디어오늘』 손석희를 위한 변명… 욕먹더라도 공개하는 게 맞았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JTBC 녹음파일 보도, 비윤리성이 명백해 보이는 ‘도용’이나 ‘가로채기’, ‘유족의 공개 반대’ 등과 같은 몇 마디 말로 단순화시킬 수 없는, 윤리적으로 꽤 복잡한 사안이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우리 언론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 독자나 시청자로 대변되는 사회에 대한 공적 책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라는 중요한 이슈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를 위해 언론은 보도하는가? 취재원과 의 신의 내지는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일반 독자나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공적 이슈에 대한 보도를 지체하거나 유보하는 언론사는 과연 윤리적이라 할 수 있는가? 취재원이나 동료 집단에 대한 충성의무와 일반 독자나 시청자에 대한 충성의무가 상충할 때 기자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언론이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일반 독자나 시청자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는 언론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모든 법규를 잘 지키는 ‘착한 언론’이 아니다. 오히려, 일반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알려야 할 일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때로 부도덕한 행동까지도 감수할 수 있으며 취재원과의 대립을 불사하고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추적, 파헤칠 수도 있는, 어떤 면에선 ‘나쁜 언론’이 아닐까 싶다.

사실의 과장과 왜곡

언론보도의 ‘분장’과 ‘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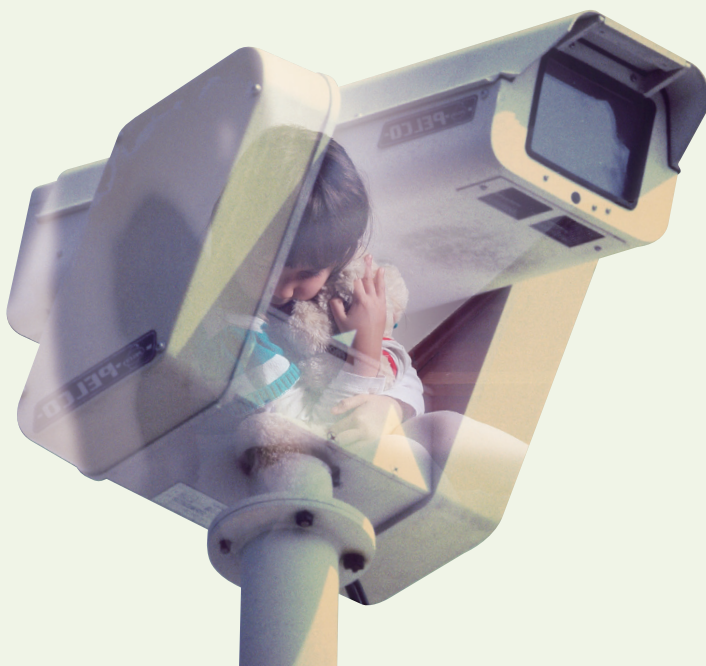


조원철

변호사

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오래 전 TV 프로그램에서 가수 출신 여성 MC가 얼굴에 진한 화장을 한 것을 두고 한 출연자가 분장이 아니라 변장을 했다고 놀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분장은 영상매체에 등장하는 인물의 용모를 그 프로그램이나 배역의 내용·성격에 맞추어 꾸미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화장보다는 진하지만 출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알아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변장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꾸며 다른 사람으로 오인케 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보도에서의 과장된 사실과 왜곡된 사실 내지 허위사실의 차이도 비슷하지 않을까. 과장된 사실이 분장에 해당된다면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사실은 변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7월에 한 공중파 TV의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원 교사가 원생을 때리고 학대하였다는 보도가 나갔다. 방송사는 그 보도에서 유치원 내 CCTV 영상을 함께 내보냈는데, 일부 영상을 실제보다 빠른 속도로 재생하여 방송하였다. 문제의 장면은 교사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원생을 밀어버리거나 머리를 쥐어박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었었는데, 정상적인 재생속도에서는 교사가 원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보도된 영상은 교사가 다소 강하게 폭행하고, 원생들이 폭행으로 갑자기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언론보도에서 사실의 과장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화젯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만연해 있다. 문제는 허위보도, 그것도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인 허위보도이다. 위에서 소개한 뉴스 보도와 관련하여 유치원 원장이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문제의 영상 보도가 사실의 과장 정도가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정 보도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포함하여 4천여 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왜곡(歪曲)의 사전적 뜻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는 것이다. 영어로는 Distortion에 해당하는데, 그 원래의 의미는 모양을 찌그러뜨린다는 뜻이다. 악수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빠르게 재생하면 상대방을 때리려는 것처럼 보이고, 가볍게 꿀밤을 먹이는 행동도 머리에 큰 충

격이 갈 정도로 폭행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심지어 연인의 얼굴을 손으로 사랑스럽게 감싸는 행동도 뺨을 때리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해당 방송사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부득이하게 빠르게 편집해야 했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일부 장면을 반복적으로 재생한 점을 들어 방송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재판부는 방송사가 재생 속도를 빠르게 편집한 것은 단지 행위의 속도 증가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력의 강도를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여기서 사실의 왜곡이란 사실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하지만, 원래의 내용이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실을 조작해 낸다는 점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다를 바 없다.

그 방송사는 어떠한 의도로 CCTV 영상의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하여 보도를 했을까. 우선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때리고 학대한다는 보도 내용을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실감나게 전달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다.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때렸다는 것은 분명 대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보도 가치가 있는 사건이지만, 워낙 폭력적인 사건들에 무감각해졌을지도 모를 시청자들의 뇌리에 일종의 충격요법을 사용하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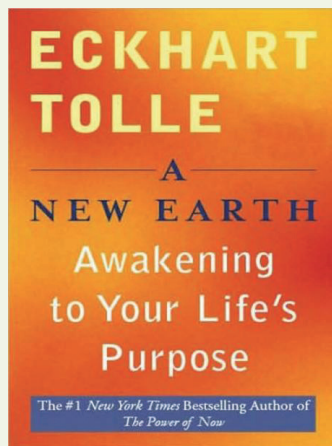
이로써 그 방송사나 관계자가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기자나 편집자로서는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기사를 보도하였다는 성취감 내지 만족감을 더 크게 키울 수 있고, 방송사는 시청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이익만으로는 왜곡된 보도의 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느낌이다. 단순히 사실의 과장 정도가 아니라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편법을 썼고, 그러한 편법은 곧 들통이 나거나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도 한 공영방송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말이다. 언론의 기능 중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은 사실의 전달에 있다. 요즘과 같이 언론사별로 정치적인 성향이나 가치관에 있어서 커다란 괴리가 있는 시대에 중립성을 바라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사실 보도에 있어서 객관성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룰이다. 그러한 기본적인 룰이 지켜지지 않고서는 건전한 여론 형성은커녕 서로 적대적인 대립과 다툼밖에 남을 것이 없다. 이미 우리나라 언론계의 현실이 오래전에 그러한 수렁에 빠졌다고 보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견해가 아닐 것이다.

서구의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에크하르트 톨레(Eckhart Tolle)는 그의 저서 『A New Earth』(국내에서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제목으로 번역본이 출판되었다)에서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대부분의 문제가 에고(Ego)에 있음을 잘 지적하고 있다. 아주 어려서부터 쌓여 온 생각과 감정, 그리고 외부로부터 주입된 관념들로 이루어진 에고가 모든 인간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라고 하셨을 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에고가 없음을 뜻한다고 한다. 부처님이 가장 경계하신 아상(我相)이라는 것도 에고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에고를 ‘나’라고 믿고 에고의 지배를 받지만, 실상 에고 자체는 실체가 없는 불안정한 것이기에 에고는 항상 불안해하고 외부의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고 한다. 에고의 대표적인 생존전략 중 하나가 나와 남을 비교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이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이기고자 하는 것은 에고의 욕구이다. 화는 불평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 찾아오는 감정이다. 에고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과 관점을 객관적인 사실과 혼동한다. 나아가 에고는 하나의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 간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에고는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왜곡되게 해석하는 데 달인이다.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믿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마음의 기능장애이다. 에고는 인류 공동의 기능장애라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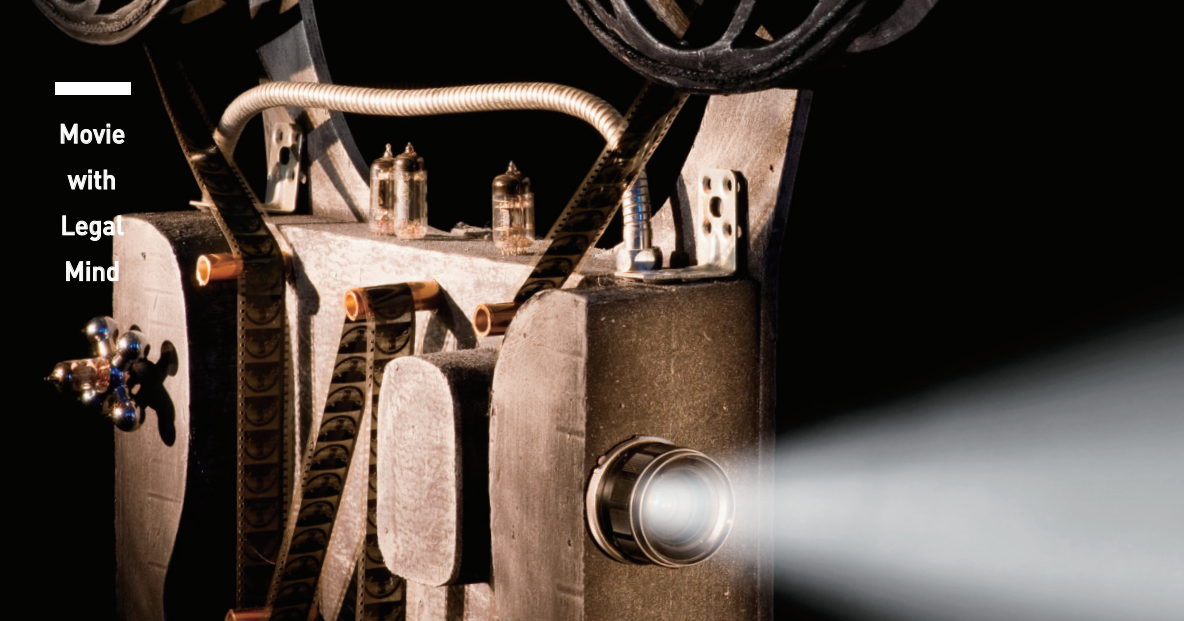
에크하르트 톨레의 저서
『A New Earth』 표지
(출처 : 위키미디어)

부정적인 감정들은 충분히 마주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뒤에 고통의 잔재를 남긴다. 그 고통의 잔재들이 모여 하나의 에너지 장을 형성하는데, 에크하르트는 이를 고통체(Pain-body)라고 한다. 고통체는 단지 개인적인 경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 집단적으로 겪은 고통도 그곳에 함께 한다. 예고와 마찬가지로 고통체도 자신의 생존을 목표로 하기에 주기적으로 먹이, 즉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는 자신의 기존 에너지와 잘 맞는 에너지, 즉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고통체가 결코 소화해 낼 수 없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고통체는 주위에 갈등과 부정적인 반응을 야기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 무거운 고통체를 지닌 사람들은 때론 어떤 사명을 위해 싸우는 활동가가 되기도 하나,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애초의 사명에 반대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언론과 방송의 상당 부분은 사람들의 고통체에 음식을, 에너지를 제공한다. 대립과 갈등, 그리고 폭력을 구경하면서 사람들은 내재된 고통체를 만족시키고 더 강화시킨다. 결국 언론사는 뉴스를 파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 즉 고통체를 위한 먹이를 파는 셈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의 보도를 본 수많은 시청자들은 해당 유치원과 교사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엄청난 양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또 자신들 내부에 축적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 내부에 자리 잡은 예고와 고통체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며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요즘 인터넷 시대에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온라인 기사에 독자

들이 댓글로 자신들의 의견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태반의 댓글이 의견 제시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의 배설이나 마찬가지로인 것은 언론보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5년간 TV를 시청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도 TV를 끄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면서 교황은 누구나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면 건강해질 수 있고, 자신의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교황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언론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동안의 활동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언론보도를 통하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보탬이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내부의 예고를 만족시키고 고통체를 키워 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였던 것은 아닌지를 ...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김주연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직원

스칼렛의, 스칼렛에 의한, 스칼렛을 위한 영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처음 본 것은 열 몇 살 무렵 텔레비전에서 하는 주말의 명화에서였다. 미국 남북전쟁 전후의 남부를 배경으로 스칼렛의 사랑과 삶을 그린 영화로, 필자는 완전히 스칼렛에 푹 빠져버렸다.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다. 스칼렛은 애슐리를 사랑하는데, 애슐리가 멜라니와 결혼하자 화가 나서 찰스와 결혼한다. 그러나 남북전쟁에서 찰스가 죽고 스칼렛은 동생의 약혼자인 프랭크와 결혼하나 프랭크도 죽는다. 마지막으로 스칼렛은 레트와 결혼하나 결국 그와 헤어지며 영화는 끝이 난다. 이것만 보더라도 스칼렛의 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다. 매력이 없고서 어떻게 세 번이나 결혼할 수 있겠는가.

스칼렛은 돈을 구하려고 레트가 걱정되는 척 거짓 연기를 하기도 하고, 동생에게 새 애인이 생겼다는 거짓말로 동생의 약혼자를 가로채기도 하는 나쁜 여자지만, 그럼에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매력을 지녔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애슐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북군의 공격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

떻게 보면 자신의 연적인 멜라니를 끝까지 지켜내는 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졌는가 하면, 급한 성격을 숨기지 못하고 다 내보이는 허술한 면도 가졌다. 찰스의 죽음으로 미망인이 된 스칼렛이 거울 앞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자기 모습을 불만스럽게 바라보다, 검은 모자 대신 깃털이 화려하게 장식된 모자를 바꿔 쓰고는 흡족하게 웃는 장면이 있었는데, 유모가 이를 보고 말리자 스칼렛이 하는 말이란 “난 아직 과부가 되기엔 젊단 말이야. 난 슬프지 않은데 왜 슬픈 척 해야 하지?”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천진난만한 스칼렛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는가. 또 레트가 떠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스칼렛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흐느껴 울다가 언제 울었냐는 듯 울음을 그치고는 눈을 반짝이며 “어쨌든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생각하자. 타라로 가면 생각이 날 거야.”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화수분 같은 에너지는 오직 스칼렛만의 것이었다. 이렇듯 여러 매력들이 펄펄 끓는 용광로 같은 스칼렛에 필자는 눈과 마음을 빼앗겼다. 이것이 내가 이 영화를 꽤 오랫동안 “스칼렛의, 스칼렛에 의한, 스칼렛을 위한 영화”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스칼렛 뒤에 가려진 소외된 흑인들을 마주하다

그런데 최근 우연히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이전과는 다른 장면과 대사들이 내 마음에 와서 박혔다. 처음 눈에 밟힌 장면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영화 초반부에 나온 파티 중간의 낮잠 시간을 비춘 장면이었다. 스칼렛의 유모 매미가 “기품 있는 가문의 아가씨들은 다 낮잠을 잔다.”고 말한 대사를 통해 유추해보면, 당시 미국 남부에서는 파티 중간에 여자들이 낮잠 일정을 갖는 게 전통처럼 행해진 모양이다. 방안 곳곳에 백인 처녀들이 파자마 같은 것을 입고 편하게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녀들이 덮지 않도록 기껏해야 예닐곱밖에 안 돼 보이는 어린 흑인 소녀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다 큰 처녀들이 좀 더 쾌적하게 숙면할 수 있도록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이 자신들의 상체만한 부채를 든 팔을 연신 아래위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들 간의 차이는 오직 피부색 하나였다. 필자는 끝없이 돌아가는 불평등의 작은 수레바퀴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저 아이들은 별일이 없는 한 평생 백인 아씨의 시중을 들며 살아갈 터였다.



부채질 하는 흑인 소녀 (출처: 1939년 개봉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캡처)

왜 그 전에는 무심결에 지나쳤던 이 장면이 눈에 밟혔던 것일까. 아마도 얼마 전에 첫 아이를 낳은 것이 나로 하여금 저 작은 아이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갖도록 하였고, 이 연민의 감정이 기폭제가 되어 스칼렛 뒤에 가려져 있던 흑인들을 마주하게 했던 것 같다. 흑인들에 눈을 돌리니 영화의 풍경이 전혀 달라졌다. 흑인들은 하나같이 백인의 시중을 들거나 백인을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에 머물렀을 뿐, 어느 극중 인물 하나 고유의 성격과 주체적인 의도를 가지지 못했다. 그들은 거기 있었지만, 존재한다고 할 수 없었다.

사실 이러한 인종 간 불균형은 영화의 오프닝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남북전쟁 전의 남부 그곳은 신사도와 목화밭으로 상징되는 곳. 이 아름다운 지방은 기사도가 살아있는 마지막 땅으로 용감한 기사와 우아한 귀부인, 그리고 지주와 노예가 함께 존재하는 곳.



남북전쟁에 참전하는 빅샘과 인사를 나누는 스칼렛
(출처: 1939년 개봉작 <비람과 함께 사라지다> 캡처)

책 속에서나 있음직하고 꿈처럼 기억되는 과거가 오늘로 살아있는 곳. 문명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었다.”라는 말로 영화는 시작한다. 영화는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남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향수의 가운데에는 흑인 노예들이 일군 목화밭과 이 목화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우아하게 살아가는 백인들, 즉 백인 지주와 흑인 노예의 공존이 있었다.

지배당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흑인들의 언행을 영화 곳곳에서 맞닥뜨렸다. 예컨대 스칼렛 집안의 노예 빅샘이 남북전쟁에 참전하러 가면서 스칼렛에게 한 말이 그랬다. 그는 “남부가 우릴 원하니 우린 참호를 파야죠. 양키를 무찌르고 올게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주인을 위해 당연한 일을 하러간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노예 해방에 대하여 남부는 반대, 북부는 찬성 입장이었는데, 노예가 남부의 승리를 위하여 참전하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또 멜라니 집의 흑인 하인이 집 뒷마당에서 백인 주인 식탁에 올릴 닭을 잡으며 “백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어야지.”라고 혼잣말하는 장면도 그랬다. 그들은 백인들이 보지 않을 때도 언제나 충성했다.

스칼렛의 유모 매미와 몸종 프리시도 있었다. 매미는 백인 귀부인이 지켜야 할 생활규범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스칼렛에게 이를 항상 주지시켰다. 가령 몇 시가 되기 전에는 가슴이 파인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남들이 보는 데서는 밥을 새처럼 조금만 먹어야 된다고 하는 식이었다. 스칼렛의 어머니 엘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다 집에 늦게 들어오면 “저녁도 안 드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간호하러 다니시다니 … (중략) … 쓰레기 같은 것들이 아가씨를 지치게 하는군.”이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매미에게는 스칼렛 집안이 곧 자기 자신이었으며 흑인으로서 정체성은 전혀 없었고 바깥의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주인을 힘들게 하는 쓰레기 같은 자들일 뿐이었다. 매미 역의 여배우는 흑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나, 한편에서는 굴욕적인 연기로 흑인들에 대한 편견을 심어줬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몸종 프리시는 멍청하고 게으르며 겁이 많은 캐릭터로 표현되었다. 프리시는 험난했던 멜라니의 출산을 스칼렛 옆에서 돕는데, 프리시가 한 일이라곤 천하태평하게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무서워서 벌벌 떨거나 레트에게 자신이 한 일을 무용담으로 꾸며 과장해서 말하는 게 전부였다. 사실 프리시가 영화에서 실제로 한 역할은 스칼렛의 기지, 강인함, 용기를 더욱 돋보이게 해준 것이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 영화가 인종 간 갈등을 주제 전면으로 내세운 다른 작품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인종 간 갈등을 표현했다고 느꼈다. 영화 속 불평등이 의도된 설정이라기보다 다른 이야기를 하던 중 우연히 새어나온 당시의 실제 모습이자 사람들 무의식의 반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인 1856년 당시 흑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보여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흑인 남성이 지주에게 돈을 주고 자신을 풀어달라고 제기한 소에서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흑인이어서 시민이 아니므로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인류 역사에서 흑인은 열등한 족속이어서 노예가 되는 것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됐다는 실로 어이없는 내용의 판시도 덧붙였다. 불과 150년 전만 하더라도 오로지 생물학적인 특성으로 어떤 삶을 살지가 결정됐던 것이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러한 부당한 처우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다. 필자는 약간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지금의 세상도 150년 후에 바라보면 너무도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게 아닐까.

불평등을 지나치지 않는 예민함의 가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뜻하지 않게 인종차별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불평등을 지나치지 않는 감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애초에 텍스트를 만들 때는 그 안에 차별을



유모 매미(상)와 몸종 프리시(하)
(출처 : 1939년 개봉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캡처)

답아낼 의도가 없었지만, 나중에 텍스트가 소비되는 과정에서 관객이나 독자가 차별의 부당함을 마주하는 경험은 일면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의 불평등 현상도 거의 대부분 애초부터 의도된 것은 아닐 것이고, 또 미리부터 “나 불평등하오.”라고 광고하며 등장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으로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도 금하고 있는 현대에는 차별의 양상이 예전보다 더 비가시적이고 은근하고 교묘할 것이다. 그렇다면 ‘불평등을 지나치지 않는 감각’은 어쩌면 대단히 중요한 미덕일 수도 있겠다. 이는 일상 속에 숨은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사실상의 첫 단추이다. 그리고 이런 감각들로 숨어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찾게 된다면 분명 그만큼 더 나은 세상으로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불평등하다고 할 만한 게 어떤 것이 있을까. 가령 구직자의 성별, 가족 사항, 사진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우리 주변의 흔하디흔한 이력서는 어떨까. 어떤 이들은 고용주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정보 요청은 그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이유 없는 차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이는 단순히 고용주의 권한 문제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채용 시 성별, 나이, 혼인 여부, 용모 등에 의한 차별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대다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차별 금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명시적인 사회 동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력서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것을 다른 문제로 치부해버린다. “이력서는 원래 그런 정보를 채워 넣으라고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명백히 이력서의 이와 같은 정보는 채용 시장의 불평등을 조성하고 고착화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사진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해 9월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별 인사 담당자 5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서 사진을 평가한다고 대답했고, 200여 명에 달하는 인사담당자가 사진을 보는 이유에 대해 “외모가 준수하면 호감이 가서”, “외모가 경쟁력이라서”라고 대답했다.¹⁾

여기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사업주가 사진의 외모를 본다면 이는 못생긴 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사진의 첨부는 금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주가 현명하게도 사진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면 굳이 사진의 첨부를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나는 얼굴을 통해 인성을 본다”는 용한 사업주가 있으면 면접에서 확인하면 된다. 게다가 사진은 구직자의 성별, 나이, 인종 등도 드러내므로, 사진이란 존재는 이래저래 채용의 공정성만 해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력서에 사진을 첨부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력서에 인종, 성별, 나이, 출신국가 등을 기입하는 난도 없다.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묻는 것은 고용상 차별행위

1) 『Story of Seoul』, 2015. 2. 28. 박주영, “이력서 사진, 언제까지 붙여야 하나요?,” [http://www. storyofseoul.com/news/articleView. html?idxno=2264](http://www.storyof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4)(검색일: 2015. 5. 14.)

라고 추정되므로, 고용주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면 스스로 차별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차별적 요소로 취급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궁금해 하는 이력서에 대해 여전히 관습적이고 둔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이 부족해서라기보다, 현상 이면의 불평등을 읽는 감각이 예민하지 않아서이다. 갑의 이익과 편리에 따라 만든 제도를 을의 시각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익숙지 않아서인 듯하다. 여성이라거나 나이가 많거나 용모가 별로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한 것이 차별이라면, 이러한 정보가 고용주에게 건네지는 선행적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적어도 이력서 제출 단계에서 이러한 정보가 제한 없이 제공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비단 이력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 ‘불평등을 보는 감각’을 선물해준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밖에 나가보니 길에 턱이 너무 많았다. 아기가 금방 크니 한시적인 불편함이겠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혼자서 어디를 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걷던 거리에서 불평등한 현상들이 보였다. 감각의 힘은 이런 것이다. 익숙한 것에서 고치고 싶은 것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기를 기대해본다.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페이스북과 EU의 공방



성선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초빙교수
미국 변호사

1. 빅브라더 v. 빅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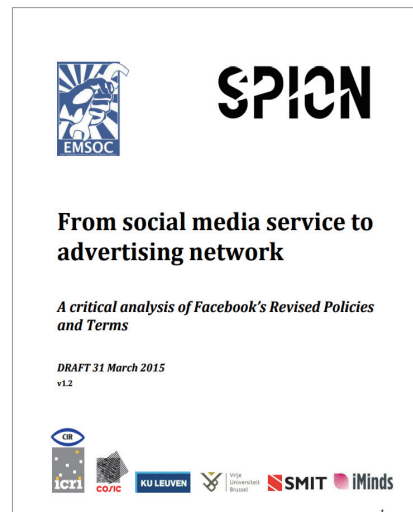
1,697시간 - 작년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디지털 세상에서 보낸 평균 시간이다. 하루 평균 4시간 40분이다. 잠자는 시간을 빼면 하루의 4분의 1이상이다. 컴퓨터 사용시간 평균 1시간, 음성통화를 제외한 스마트폰 사용시간 평균 3시간 40분이라고 한다.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디지털 세상이 될 것이다. 1,697시간 매 순간 우리는 디지털에 흔적을 남긴다. 흔적은 개인정보다. 당신이 남기는 개인정보로 누군가는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오히려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고마워한다. 아이러니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페이스북과 같은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정형 데이터보다 실시간 비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분석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가 열리면서 개인정보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 수집 욕구 또한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가공한 '소비자 데이터' 소유권을 누가 가질지, 기업에 남아 있는 '프라이버시' 관련 '소비자 데이터'를 삭제할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는 것인지 등 다양한 이슈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엄청난 양의 센서 및 소셜 데이터 등이 양산되고 컴퓨팅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분석도 용이해졌다. 스마트폰은 이용자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어디서든 정보 수집이 가능한 센서, 주파수 등으로 데이터는 소비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수집되고 활용된다. 또한 페이스북에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었는지, 오늘 기분은 어떤지에 관한 짧은 글을 남기는 순간에도

사람들의 위치 정보는 물론, 취향이나 습관, 검색 패턴, 구매 기록 등의 개인정보까지 샅샅이 알아낼 수 있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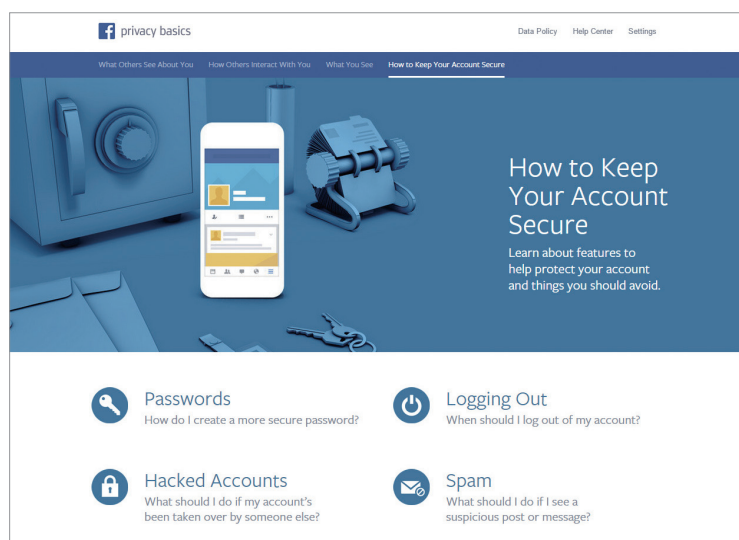
“만일 당신이 어떤 서비스를 공짜로 쓰고 있다면 당신은 고객이 아니라 ‘상품’이다.”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메타필터’ 이용자 ‘블루 비틀’이 2010년 언급해 유명해진 이 말은 이제 현실이 됐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어디서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SNS에 접속해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편리한 시대지만 ‘빅브라더(Big Brother)’의 감시는 한층 촘촘해지고 있는 것이다. SNS 이용자들은 “온라인에서 행동 하나하나가 관찰당하는 기분”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집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페이스북과 더불어 구글도 그동안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침해 혐의가 꾸준히 제기됐다. 구글은 2013년 11월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31일 공개된 벨기에 연구진의 보고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회원이 아닌 이용자들의 웹 브라우저 이용 경로까지도 동의 없이 추적했다.

(출처 : 『가디언』, “Facebook ‘tracks all visitors, breaching EU law’”, 2015년 3월 31일자 및 벨기에 루뱅대학 홈페이지)



페이스북 내 개인정보 관련 안내 웹페이지(출처 : 페이스북 홈페이지)

미국 37개 주정부로부터 1,7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페이스북은 2013년 10월 사용자가 특정 광고나 게시물을 클릭하지 않고 마우스만 올려봐도 커서의 움직임을 분석해 기록을 남기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약관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포괄적인 정보 제공 동의를 얻지만 실제로 어떤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이다. 이 같은 불만에도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침해 의혹에 대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점차 개인 맞춤형 광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명확한 개인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른바 ‘꼼수 기술’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충분히 엄격한 수준인지, 소프트웨어가 정보를 스캔하는 것을 모니터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9일 유럽 내 페이스북 법정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비엔나 지방법원에서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공판이 열린 것이다. 페이스북 법정 공방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용자 불신이 끓아 터진 대표적인 사건이다. 2만 5천여 명의 집단소송단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은 오스트리아 법대생 막스 슈렘스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2011년 페이스북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EU 법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 페이스북에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목록 열람을 요청했다. 우편으로 받은 내역은 수천 쪽에 달했다. 이후 세계에서 비슷한 요청이 쇄도하면서 페이스북은 현재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내려받기 시스템을 만들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페이스북의 수익창출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문제를 제기한 막스 슈렘스

(출처: 『로이터』, "25,000 angry users: Facebook privacy class action lawsuit to be heard by European court", 2015년 1월 27일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감시당하는 걸 알았다면 드러내지 않았을 정보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에릭 클레먼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 교수는 “법은 기술보다 늦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스스로 정보 공개 현황을 체크해야 한다.”며 “눈을 감고 있으면 침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Data Privacy) 관련 현황과 쟁점을 다뤄보고자 한다. 쟁점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에 관한 미국과 EU 법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페이스북의 정책이 유럽 내에서 위법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번 페이스북 개인정보 관련 사건의 전개 및 그 속에서 페이스북과 유럽의 입장차, 빅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방향성 등을 다뤄보고자 한다.

2. EU 프라이버시법제

유럽연합(이하 EU) 개인정보보호법제는 「1995년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The Data Protection Directive of the European Union)」이 핵심이다. 이 지침은 EU 회원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다. 물론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채택 이전에도 각국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관련 국내법 규범은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각 국가의 사정과 전통에 따라 다소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제한하게 되었고, EU의 공동시장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EU 차원의 통일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이 요구되었고, 그 결과로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제정되었다.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적용범위는 매우 넓다. 이 지침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혹은 자동인지 수작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의 모든 처리에 적용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기술적으로 중립적이어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사용된 기술적 수단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화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수작업 데이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 지침은 공공안전, 국방, 국가안보 및 형사법 분야의 회원국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지침은 가사활동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개인정보 처리의 조건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정보주체의 핵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공공 이익을 위한 경우, 공적 권한의 행사를 위한 직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셋째, 개인의 민감 정보는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민족, 인종, 정치적 견해, 종교적·철학적 믿음, 노동조합 가입여부, 건강·성생활에 관한 정보, 법의 위반과 유죄판결에 관한 정보는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처리될 수 있다. 즉, 민감한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명백한 동의를 요구한다.

넷째, 정보주체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정보주체는 제약 없이 그리고 과도한 지연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완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교정·삭제 또는 차단할 권리를 가진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반대할 권리를 가지며, 정당한 경우 처리를 중단시킬 수 있고, 또한 직접 마케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인정보에 반대할 권리를 가진다.

다섯째, 개인정보의 외국으로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타국가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이전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가 동의하거나 정보 이전이 계약 이행이나 공익 차원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한편 EU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IT환경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러한 지침(Directive)이 아닌 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규제의 형식을 격상하고, 이른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2012 개인정보보호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개인정보관리기관 사전 등록제도의 시행이다. 관리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취득하여야 한다. 둘째,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자신의 정보가 불법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추가로 공개하지 않도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 개인정보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정보를 저장장치에서 전자적으로 복제하여 얻을 수 있고, 개인정보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Right of Data Portability)를 신설하는 것이다.

3. 미국 프라이버시법제

미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는 1966년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제정에 따라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1974년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에 의해 정부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민간부문에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며 개별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한 영역별 보호 법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미국은 1974년 프라이버시법이 제정된 이래 1978년 금융

프라이버시법, 1986년 전기통신보호법, 1988년 컴퓨터 자료의 상호 비교 및 프라이버시 보호법, 1994년 전기통신 프라이버시법, 1996년 통신법 및 의료기록 비밀보호법을 각각 제정하였다. 생활영역별, 기술별로 개별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한 것이다.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특색인 영역별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많은 개별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데 개별법의 장점은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취급영역에 한정하여 법적 규제를 행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개별 영역별로 법률을 제정하기 때문에 관련업계나 이익단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민감 정보는 종교, 인종, 정치, 성 정체성, 건강,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으로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수집 또는 활용하기 원하면 데이터 제공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 및 유통하지 않는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등의 매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데이터 활용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고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보호방침이 없을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취급하여 이를 처리한다.

한편 미국은 국가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기반 전담팀에 정보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세 개의 팀을 두었는데 그 중 하나인 프라이버시 팀이 1995년 6월에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의 원칙’을 작성했다. 이 원칙은 계약 자유에 따라, 제공자의 통지와 소비자의 동의라는 두 개의 필수조건을 감안하면서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가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근래에 급속히 변화하는 IT환경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대표적인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이다.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은 소비자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의 핵심 내용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소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면서 그 배경을 “미국 소비자들은 그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명확한 규칙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실정이고, 더불어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신뢰는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적이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신뢰유지는 온라인 상의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것이며, 특히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차원에서 개인 사생활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이는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활동이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고, 경제적 이익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소비자의 기술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 것을 보여준다.

소비자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는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요소는 (1)

소비자를 위한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의 제정, (2) 인터넷 업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법규의 제정, (3) 연방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강화, (4) 정보장벽을 낮추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와의 프라이버시 기준의 상호 운용성 고려이다.

네 가지 요소 중 가장 핵심인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기 정보통제권이다. 소비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의 권리 주체로서, 개인정보 수집기관의 수집정보의 유형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기업은 개인정보의 권리자인 소비자가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사생활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추적 금지(Do Not Track)’ 기술을 통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투명성 강화이다. 소비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실무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소비자는 사생활 침해위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정보를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제공받아 개인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기업은 수집하는 정보, 이용방법, 삭제 등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사생활 보호관련 서비스의 소비자 접근을 높이기 위하여, 인지하기 용이하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하여 정보의 제공방법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맥락의 존중이다. 소비자는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가 일관된 맥락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사전 공지한 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활용하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기업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투명성 및 개인통제권의 침해로 간주하여 사건 발생 즉시 소비자는 기업을 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의 나이와 교양 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방침을 적용하도록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접근성 및 정확성 강화이다. 소비자는 데이터의 민감도·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과 이용 가능한 형태로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한편, 기업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유 및 관리할 의무가 있다.

다섯째, 최소수집의 원칙이다. 소비자는 특정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보유에 관하여 합리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기업은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삭제하여야 한다.

여섯째, 책임성 강화의 구현이다. 소비자는 기업이 소비자 개인정보 인권선언을 준수하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하여 기업은 정부와 소비자가 해당 개념의 권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 기업은 직원이 해당 개념의 책임이 있음을 숙지시켜야 하며, 이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시, ‘책임’의 개념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업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자신도 모르게 노출하고 있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2012년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맞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하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적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프레임워크 및 개인정보정책 마련에 필요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추적금지 옵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서 추적(Tracking)이란 인터넷 이용자의 행동 및 구독 습관의 기록을 공간, 가상공간, 시간과 연결시킬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는 추적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가공하여 사업자 간 일종의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만큼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것은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수·발신 정보의 대응방법을 정책적으로 다루기 위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추적금지 옵션 제공의 의무화는 이용자들이 직접 개인정보 추적 수준을 제한할 수 있도록, 브라우저 벤더들(Browser Vendors)들에게 추적 금지 옵션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추적금지 옵션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선택권을 갖는 시스템이며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추적 수준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페이스북, 구글 등 주요 기업은 추적금지 버튼을 도입하였다. 기술적 측면을 살펴보면, 이용자가 웹을 통해서 정보를 송수신할 때, 컴퓨터 요청문에는 헤더(Header)라고 불리는 작은 정보를 가지게 되는데, 이 헤더는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웹브라우저, 이용자 컴퓨터의 언어설정, 그 외 기술적 세부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추적금지는 이 헤더에 컴퓨터 언어로 “Do-Not-Track”이라는 의사표시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원클릭 버튼을 통해 이용자 본인의 이용내역을 추적하지 않도록 하는 명령문을 실행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에게 ‘프라이버시 중심 디자인’(Privacy by Design) 도입을 촉구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중심 디자인’은 개인정보보호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으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설계 단계에서 기업이 서비스·상품의 성격 및 개인정보 주기를 반영한 취급방침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 최소한의 정보 수집, 목적에 합당한 보유 기간 설정, 개인정보 파기 방침 설정, 정확성의 유지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수집·수집 목적 외 이용·특정 목적을 위해 이용자의 민감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 이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기업은 이용자에게 강요하지 않고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추적금지 기술과 같이 이용자가 정보수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데이터 브로커를 규제하는 것이다. 정보 수집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 집권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데이터 브로커들의 정체를 공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등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용자 개개인이 데이터 브로커가 수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였다.

다섯째, 자율규제의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기업과 개인정보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자율규제 시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마련되면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것을 촉구하였다.

여섯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기업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고지함에 있어서 명확하고, 간결하며,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표준화에 대하여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산업 분야별 수집 정보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상무부 주도아래 개인정보 관련 용어 및 취급방침의 표준화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 성격에 따라 다른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는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자신들이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리스트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은행·보험·고용 등 업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자기 정보 접근 및 정정 요구권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급격하게 시장이 커진 SNS나 검색 엔진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 및 수집 경로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4. 페이스북 v. EU 개인정보 소송 공방

EU와 미국은 개인정보를 대하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EU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자신이 처분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권리로 바라보지만, 미국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자신이 전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바라본다. 또한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전통적으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보호 처리절차를 하나의 법에서 다룬다. 반면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생활영역별, 기술별로 개별법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우리는 IT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강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만, 정작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지 못한다. 권리가 침해되어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면 권리를 지킨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페이스북은 북미 지역을 제외한 모든 국외 이용자와의 계약을 ‘페이스북 아일랜드’가 맺는다고 밝히고 있다. 즉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제공 정책은 EU의 법을 따른다.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개인정보 처리의 조건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행태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명시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은 EU 실정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정보주체의 핵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 또는 공적권한의 행사에서 수행되는 직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정보관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이익 또는 기본권과 자유가 이러한 이익에 우선하는 경우 등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예외사항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법으로 보면 어떻게. 페이스북이 소셜 위젯을 통해 비회원의 행태 정보를 수집한 것이 국내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크다. 이용자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첫째, 약관에 동의하는 것처럼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웹사이트 방문자에게 “이 웹사이트를 계속 이용하면 우리 약관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내 대다수 웹사이트는 이런 방법을 쓴다. 첫 페이지에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용 약관을 들여다보면 이런 문구를 적어둔다. 대다수 웹사이트가 쿠키를 쓰는 상황이니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쿠키를 심고 이걸 활용해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동의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페이스북의 정보 수집이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facebook.com’ 도메인을 쓰는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페이스북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소셜 위젯을 심은 외부 웹사이트에서도 정보를 수집했다. 예를 들면 『언론중재』 웹사이트에 들어온 독자가 『언론중재』 기사를 읽으면 페이스북에도 자기 정보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석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처리자가 얻는 이익이 정보 주체 이익보다 훨씬 큰 경우이다. 법률 용어로 ‘이익형량’이라고 한다. 두 주체 또는 법률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어느 쪽의 이익이 더 큰지 가늠해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페이스북이 불리하다. 페이스북이 면죄부를 받으려면 이용자(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안 받아 페이스북(정보처리자)이 누리는 이익이 월등하게 앞서야 하는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EU보다 더 엄격하다. 법적 근

거가 없으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수집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못 박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방향성에 비춰보면, 맞춤 광고에 쓰려고 누리꾼의 행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페이스북의 이익이 인정받기란 어려워 보인다.

페이스북이 심은 쿠키에는 이용자를 특정하는 기능도 들어 있다. 이걸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취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난다. 이에 대해 윤종수 변호사는 국내법에 비춰봐도 페이스북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은 문제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인 인식 면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마치 다른 웹사이트에 스파이를 심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박지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행태 정보 수집에 관해 특별 조항을 법제화하든지, 동의 없이 수집할 경우 처벌해야 하는지 균형 잡힌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쿠키 사용에 관한 지침을 따로 마련할 것을 주장한다.¹⁾

5. 빅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정책

비약적인 IT발전은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기여도 있는 반면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빅데이터 산업 특성상 사전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2월 빅데이터를 처리·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등에게 새로운 의무나 제한을 가하지 않도록 하되,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술적·절차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다른 정보로 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가 선행된다면 정보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자들의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법령 내에서 공개된 정보 등을 합법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1) 윤종수 변호사와 박지환 변호사의 발언은 『블로터닷넷』, 2015. 4. 7. 안상욱, ““페이스북 무차별 정보 수집, 국내법 위반 소지 커”,” <http://www.bloter.net/archives/224675>(검색일: 2015. 5. 14.)에서 인용하였다.

데이터의 수집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였다 하더라도 조합·분석 단계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수집출처 및 정보활용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 개인 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특정 개인의 사상 등 민감 정보 생성이나 이메일·문자 통신 내용의 이용 등은 금지된다.

결론적으로 “만일 당신이 어떤 서비스를 공짜로 쓰고 있다면 당신은 고객이 아니라 ‘상품’이다.”라는 앞의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비스제공자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그들은 당신의 개인정보로 돈을 버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단, 공짜가 아니라면 공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공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RIPA)과 언론인에 대한 감청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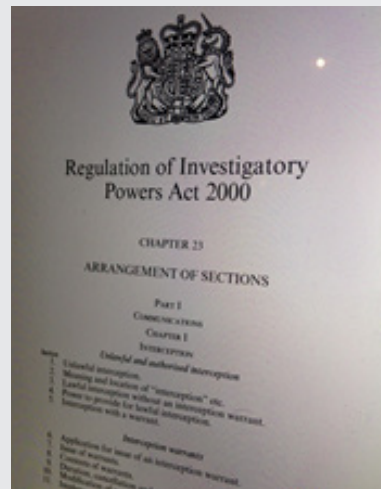
김지현
영국 골드스미스 런던대 문화연구 박사과정

영국 정부는 지난 2000년 테러 및 범죄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인터넷, 이메일, 통화기록 등을 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사권한규제법’(RIPA)을 입법했다.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공공기관의 감청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영국 경찰이 수사권한규제법에 따라 언론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청을 해온 사실이 폭로되면서, 이 법의 사용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수사권한규제법에 대한 여론 동향과 함께 영국 정부의 최근 대응을 소개한다.

수사권한규제법과 사회적 쟁점

영국에서 흔히 ‘RIPA’라고 줄여 부르는 수사권한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은 통신 감청을 포함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감시 활동에 있어 공공기관의 권한을 규율하는 법안이다. 표면상으로는 강력한 암호화나 인터넷

의 발달과 같은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0년 2월 9일 최초로 수사권한규제법안(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Bill)이 하원에 상정된 후 같은 해 7월 26일 국회 승인을 거쳐 입법이 이뤄졌다. 이후 공공 협의와 의회 토론 과정을 거친 후 의회에서 2003년 11월, 2005년 4월, 2006년 7월, 2010년 2월, 총 네 차례 개정·보완돼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됐다.



영국 수사권한규제법이 소개된 공식 문건
(출처 : www.legislation.gov.uk)

수사권한규제법은 특정 공공기관이 개인의 전자 커뮤니케이션에 접속하고 이를 감시해야 할 때 그 권한을 부여한다.¹⁾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에 근거하면, 특정 공공기관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해당 서비스 가입 고객의 커뮤니케이션 정보에 몰래 접근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로, 이 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특정 인물들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대규모 감시를 할 수 있다. 셋째, 이 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감시를 용이하게 하는 맞춤형 장비를 요구할 수 있다. 넷째, 이 법에 근거해 특정 공공기관은 보호돼 있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암호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섯번째, 공공기관은 이 법을 이용해 사람들의 인터넷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특정 공공기관의 이러한 감청 활동에 관련된 영장이나 그러한 감청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가 법원에서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한다. 요약하자면, 수사권한규제법은 국민 본인 동의

나 영장 없이도 국가가 인터넷, 이메일, 통화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비상한 권한을 부여한다.

일각에서는 테러리즘과 인터넷 범죄, 소아성애에 대한 모니터링이 수사권한규제법 도입의 주요한 이유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막상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이 법이 공공기관에 의해 부적절하게 이용될 경우, 영국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감시 권력’으로 악용될 위험성도 일찍부터 지적되었다.

수사권한규제법은 입법 초기에는 경찰과 정보기관 등 소수의 권력기관에만 그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이후 다른 공공기관까지 그 적용 범위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이제는 영국 내 지방정부와 지역 기관까지도 수사권한규제법을 이용해 쓰레기 불법 투기와 애완동물 배설물 무단 투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0/23/contents>(검색일: 2015. 5. 11.)

이처럼 영국 사회 전역으로 수사권한규제법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가운데, 2008년을 기점으로 BBC를 비롯한 영국 내 주요 언론 매체들이 지방정부의 수사권한규제법 남용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다. 풀(Poole) 지역의 의회가 어느 한 가정이 자녀를 이웃동네 학교에 보내려고 주소를 위조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3주 동안이나 해당 가정의 통화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것이 비판 보도의 발단이 됐다.²⁾ 이 사건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영국 전국의 지역 의회들이 수사권한규제법에 따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샘프턴 남부(Northampton South)의 브라이언 빙리(Brian Binley) 하원의원은 지방정부가 “만화 속 탐정 캐릭터처럼 행동하는 것을 중단하라.”며 수사권한규제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³⁾ 거래표준기관(Trading Standards Institute) 역시 비판적 여론에 합류, 수사권한규제법을 이용한 ‘감시’가 특정집단들의 성공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러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2008년 6월 지방정부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의 사

이먼 밀턴(Simon Milton)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영국의 모든 지역 의회 지도자들에게 “지방정부가 수사권한규제법을 이용해 하찮은 문제까지 권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식문건을 전달하기에 이른다. 사이먼 밀턴 위원장은 보고서에서 지역 의회가 수사권한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적절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 과정을 리뷰(Review)해야 한다고 새로운 행정 절차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지방정부가 수사권한규제법을 동원하는 횟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감시를 위해 수사권한을 청구한 횟수는 8천 477건으로 전년 대비 1천 4백건이나 줄었다.⁴⁾

‘스노든 폭로’와 언론인 감청 논란

한동안 잠잠해졌던 수사권한규제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지난해 1월 ‘가디언’(The Guardian)이 ‘스노든 폭로’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부터다. ‘가디언’은 “2013년 미국 NSA(국가안보국)의 전 세계적인 감청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에 따르면, 영국의 정보통신본부 GCHQ(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⁵⁾의 대규모 감

2) BBC, 2008. 4. 10. "Council admits spying on family," <http://news.bbc.co.uk/1/hi/england/dorset/7341179.stm>(검색일: 2015. 5. 12.)

3) BBC, 2008. 5. 22. "Council 'acted like Dick Tracy'," <http://news.bbc.co.uk/1/hi/england/northamptonshire/7414382.stm>(검색일: 2015. 5. 12.)

4) Telecomstech, 2014. 12. 8. Daws, R., "Surveillance is not a human rights violation, UK tribunal rules," <http://www.telecomstechnews.com/news/2014/dec/08/mass-surveillance-not-human-rights-violation-uk-tribunal-rules/>(검색일: 2015. 5. 11.)

5) 영국 외무부에 소속된 GCHQ는 영국 내부부의 MI5, 영국 외무부의 MI6와 함께 영국의 대표적인 3대 정보기관으로 불린다. 2013년 10월 전직 CIA, NS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영국 GCHQ가 감청 프로그램을 이용해 35개국 정상들의 아이폰을 도청했다고 폭로해 GCHQ는 국제적으로 비난받았다. 올해 2월에도 에드워드 스노든은 NSA와 GCHQ가 심(SIM)카드 내에 저장된 암호화키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스마트폰의 도청 및 감청을 수행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폭로했다["ZDNet Korea", 2015. 2. 23. 손경호, "美·英 정보기관, 폰 심카드 해킹해왔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0223111532 (검색일: 2015. 5. 12.)].

청활동이 미국과 영국의 주요 언론사에 대해서도 이뤄졌다.”고 보도했다.⁶⁾



미국 NSA와 영국 GCHQ의 감청 활동을 폭로한
2013년 '가디언'의 홈페이지 캡처
(출처: 가디언 홈페이지)



영국 GCHQ 전경
(출처: '가디언', "GCHQ captured emails of journalists from top international media", 2015년 1월 19일자)

영국의 3대 정보기관 중 하나인 GCHQ는 감청을 전문으로 한다. 스노든의 폭로에 따르면 GCHQ는 수사권한규제법을 이용해 영국과 미국에서 BBC와 로이터(Reuters), 가디언(The Guardian),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르몽드(Le

Monde), 선(The Sun), NBC,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 등의 유력 매체의 사내 이메일을 전방위적으로 수집, 정보 요원들의 내부 인터넷 망을 통해 공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가디언'은 스노든이 폭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지난 2008년 GCHQ가 10분만의 수집활동만으로 7만여 개에 이르는 언론인들의 이메일을 수집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수집된 이메일에는 광고성 이메일도 포함돼 있었지만, 언론인들과 편집인들이 기사 내용을 논의하는 민감한 내용의 이메일도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GCHQ는 감청 과정에서 관련성이 없는 데이터를 쉽게 걸러낼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는데, 이를 실험하고 그 결과물을 측정, 저장하기 위해 언론인들의 이메일을 대량으로 수집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런데 막상 감청된 문건들은 기밀로 분류되지도 않은 채 대부분 무성의하게 보관됐다. 이에 대해 '가디언'은 GCHQ가 최소한 해당 문서들을 비밀리에 보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청이 폭로되는 과정에서 세상을 더 놀라게 한 것은, GCHQ가 언론인을 테러리스트나 해커와 같은 위협적인 범주로 분류해왔다는 사실이다. 폭로에서 공개된 GCHQ의 문건에 따르면, 모든 뉴스 매체의 언론인과 편집인이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위협 범주로 분류됐다. 흥미로운 점은 언론인 중에서도 탐사보도 언론인들이 특히 문

6) 'The Guardian', 2015. 1. 19. Ball, J., "GCHQ captured emails of journalists from top international media," <http://www.theguardian.com/uk-news/2015/jan/19/gchq-intercepted-emails-journalists-ny-times-bbc-guardian-le-monde-reuters-nbc-washington-post>(검색일: 2015. 5. 12.)

제라고 거론됐다는 사실인데, 이는 이들이 퇴직한 공직자와 비공식적인 접촉을 시도, 내부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구체적으로 GCHQ는 언론인을 테러리스트나 해커와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규정하는 한편, 전체적으로는 ‘낮은’ 수준의 정보 보안 위협에 해당한다고 분류했다. 하지만 그 위험성을 5점 만점으로 계산할 때, 언론인에게는 ‘(위험) 가능성’(Capability) 항목에서 2점을, ‘우선성’(Priority) 항목에서 3점이나 주었다. 반면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중간’ 수준의 정보 보안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탐사보도 언론인보다는 위험성을 높게 보았다. 하지만 ‘우선성’ 항목에서는 2점을 주어 언론인보다 덜 위협적이라고 분류했다. ‘가능성’ 항목에서는 4점을 주어 언론인보다는 높은 점수를 매겼다.

‘가디언’의 보도에 대해 GCHQ의 대변인은 “정보 기관의 활동에 대해 발언하지 않는 것이 다년간의 정책이었다. 모든 GCHQ의 작업은 엄격한 법적·정책적 틀을 준수하여 그 활동의 필수성과 적합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정부기관의 철저한 관리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의 주장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GCHQ의 모든 활동은 유럽인권보호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 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전국에서 언론계 반발

국가 정보기관이 언론인을 테러리스트나 해커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범주로 분류하고 대규모 감시 활동을 펼쳤다는 사실을 접한 언론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문제는 이러한 GCHQ의 감청이 수사권한 규제법에 의거했을 때에는 합법이라는 점이다. 현행 수사권한규제법에 의하면 경찰이나 방위 기관은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조직 내 관리자의 허락만 구하면 수사 대상의 전화 및 통신 기록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이후로도 정보기관이 수사권한규제법을 이용하여 어떠한 법적 승인도 거치지 않은 채 언론인 대상 대규모 감청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인의 커뮤니케이션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는 것을 가능케 만드는 수사권한규제법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영국 정부는 언론인의 기밀이 담긴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사회적 압력에 직면했다. 영국 내 언론인들과 법조인들은 수사권한 규제법과 연계된 경찰의 감시권력 오용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영국 총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표현의 자유 법’이 긴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언론인의 커뮤니케이션을 감청하는 것에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에 영국 내 전국지 포함 100여 개 신문 편집인들의 서명을 담아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 측에 전달했다.⁷⁾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지는

7) "Financial Times", 2015. 1. 20. Mance, H., "UK editors seek reform of police access to journalists' records," <http://www.ft.com/cms/s/0/e6ead332-a001-11e4-aa89-00144feab7de.html>(검색일: 2015. 5. 12.)

“우리 언론인은 수사권한규제법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는 제목의 칼럼으로 수사권한규제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⁸⁾

스노든의 폭로 이전에도 수사권한규제법을 악용한 언론인 감청은 종종 언론계의 골칫거리였다. ‘가디언’은 1월 19일 기사에서 영국 경찰이 수사권한규제법을 이용해 ‘선(The Sun)지의 톰 뉴튼 던(Tom Newton Dunn) 정치부 편집인의 통화기록에 접근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언론인 무작위 감청은 수사권한규제법을 통한 감청 활동이 특정 사건이나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그것도 특수한 사회적 집단인 언론인을 대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수사권한규제법이 언론의 공익성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된 것이다.

영국 정부, 언론인 대상 감청 실태 조사

이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요청으로 영국 의회는 공공기관이 수사권한규제법을 동원해 언론인을 감청한 활동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통신감청위원회인 IOCCO(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Commissioner’s Office)가 2014년 10월부터 조사에 착수, 지난 2월에 그 결

과물을 총리실에 제출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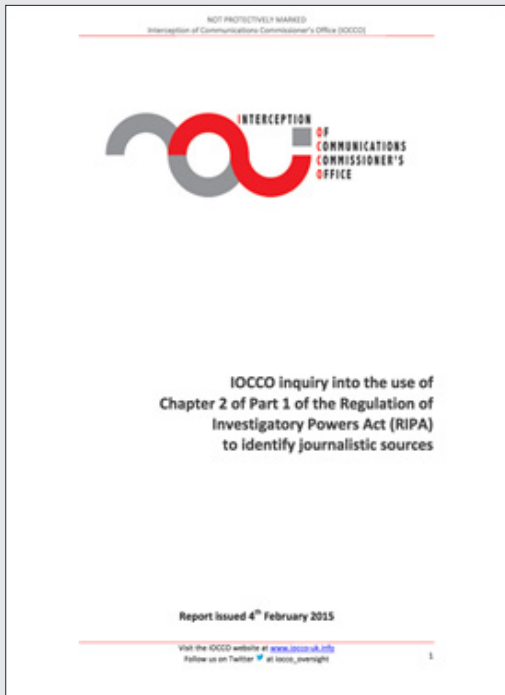
언론에 공개된 IOCCO 조사결과에 따르면, 언론인에 대한 경찰기관의 감청 활동은 수사권한규제법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IOCCO가 경찰의 감시 활동 현황을 수치로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19개에 달하는 경찰기관들이 언론인의 기밀 정보 출처를 캐낸다는 명목하에 60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대규모 감시 활동을 펼쳐온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보고서에는 경찰이 34건의 수사를 위해 82명의 언론인과 242명의 정보원 사이에서 오고 간 통화나 이메일 기록에 대해 감청을 요구한 사실과 그 구체적인 사례가 공개됐다. 경찰은 수사권한규제법을 이용해 이러한 수사들에 있어 조직 내 관리자들에 의한 승인만으로도 언론인들에 대한 감청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승인 과정의 적절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언론을 통해 더 논란이 된 것은 실제 경찰이 두 달간의 감청 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절반 가까이가 통화기록에서부터 교통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실제 수사와는 관계없는 개인 정보였다는 점이다. 언론인의 특성상 수집된 정보 중에는 수사와는 관련없는, 보도를 위한 기밀정보까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IOCCO는 지난 3년 동안 19개 경찰기관이 수

8) 『The Independent』, 2015. 1. 18. Gore, W., “We journalists have every reason to fear the Ripa,” <http://www.independent.co.uk/voices/comment/we-journalists-have-every-reason-to-fear-the-ripa-9986512.html>(검색일: 2015. 5. 13.)

9) 『The Guardian』, 2015. 2. 4. Rozenberg, J. and J. Halliday, “Police will need judge’s permission to access journalists’ phone and email records,”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5/feb/04/police-600-applications-trace-journalist-sources-snopping-watchdog>(검색일: 2015. 5. 13.)

사를 목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정보까지도 공권력을 이용해 제공받은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제도 수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통신감청위원회인 IOCCO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 수사권한규제법에 근거하여 영국 경찰이 언론인 정보를 감청한 실태를 조사해 담았다.
(출처: IOCCO 홈페이지)

나아가 IOCCO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측에 “언론인의 정보원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내 자유로운 언론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들어 현재의 수사권한규제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언론인에 대한 감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가

져올 경우, 이는 인권 침해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러한 수사권한규제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해결할 방법은 있는 걸까? IOCCO의 보고서가 제안하는 것은 두 가지다. 먼저, IOCCO는 보고서에서 경찰이 수사권한규제법을 통해 감청 활동에 대한 요구를 할 때 “필수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을 유지할 경우, 경찰 고위직에게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주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언론인의 커뮤니케이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인물들이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그 예시로 감독관 등을 거론했다.

두 번째 제안은 수사권한규제법의 개정이라는 초강수이다. IOCCO는 표현의 자유와 수사권한규제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이 언론인의 비밀스런 정보원을 밝히려 할 때 “판사의 승인을 통해서만 수사권한규제법을 이용하도록 하는 강력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총리 측에 제안했다.

정부 대응과 제도적 변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IOCCO가 제출한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대변인은 총리가 판사의 승인을 거치는 방식으로 수사권한규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

했다. 문화부 장관 출신인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 신임 산업부 장관은 이러한 총리실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사지드 자비드 장관은 “저널리즘은 테러리즘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수사권한규제법이 반테러법의 차원에서 입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합법적인 보도를 위협하는 데 악용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경찰을 강력하게 비판했다.¹⁰⁾ 영국 언론 역시 향후 수사권한규제법이 언론인에게 적용될 때, 그 적용 과정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총리실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¹¹⁾

실제로 총리실의 발표가 있는 뒤 2주 만에 BBC는 “IOCCO의 제안대로 향후 경찰이 수사권한규제법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임시수단을 영국 내무성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¹²⁾ 내무성은 다음 의회가 구성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이러한 변화를 공식적으로 입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내무성의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당 당수이기도 한 닉 클레그(Nick Clegg) 부총리는 “아무 조치도 없는 것보다는 임시수단이 있는 게 낫다. 하지만 영구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가 현재

의 임시적 조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수사권한규제법에 대한 현실적인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계속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맺으며

수사권한규제법이 도입되고 15년 만에 영국 정부는 언론과 국민의 표현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해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된 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방정부로부터 경찰에 이르는 공공기관이 조직 내부의 승인이 아닌 판사의 법적 허가를 통해서만 수사권한규제법을 행사할 수 있게끔 임시적 조치를 취한 것이 그 첫걸음이다. 영국 내각은 이에 멈추지 않고 향후 영국 의회에서의 실질적인 개정이 논의될 것이라고 그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물론 영국 사회가 수사권한규제법의 도입 이후 일련의 폭로 사건과 스캔들을 겪으면서 갖게 된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인다. 닉 클레그 부총리의 발언처럼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보다 현실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제도에 대한 개선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과연 수사권한규제법이 어디까지 변화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10) 『The Guardian』, 2015. 2. 5. Mason, R., “Culture secretary Sajid Javid: journalism is not terrorism,”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5/feb/05/culture-secretary-sajid-javid-journalism-not-terrorism>(검색일: 2015. 5. 13.)

11) 『The Guardian』, 2015. 2. 4. Rozenberg, J. and J. Halliday, “Police will need judge’s permission to access journalists’ phone and email records,”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5/feb/04/police-600-applications-trace-journalist-sources-snopping-watchdog>(검색일: 2015. 5. 13.)

12) 『BBC』, 2015. 2. 21. “Police requests for journalists’ information must go to judge,” <http://www.bbc.co.uk/news/uk-31564777>(검색일: 2015. 5. 13.)



영국 명예훼손법 및 해설

Defamation Act 2013 and Explanatory Notes



번역 :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본 자료는 명예훼손에 관해 가장 오랜 판례법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1952년, 1996년 및 2013년 세 차례 제정법으로 보완된 영국의 명예훼손법을 번역·편집하여 우리 명예훼손법의 입법과 해석에 참고가 되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2013년 개정 법률의 조문을 해석하여 순서에 따라 게재하였고, 2013년 개정 시 법무장관이 개정안의 해설을 위해 공표한 내용을 각 해당 조문에 이어 'COMMENTARY'로 덧붙였습니다. 그 중 우리 법제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게재를 생략했습니다.

- 번역자 주

【개요】

영국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민사법은 다년간 보통법에 의해 발전되어 왔고, 제정법인 1952년 명예훼손법과 1996년 명예훼손법에 의해 보완되었다. 2013년 명예훼손법은 영국 명예훼손법에 실제적 변경을 다수 가하였으나 명예훼손법을 단일한 제정법에 통합한 것은 아니다.

2013년 명예훼손법은 명예훼손에 관한 법의 관점을 개혁하여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간 공정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 보호) 및 제10조(표현의 자유) 간에 공정한 균형이 취해지도록 요구하는 유럽인권재판소 판례(특히 Von Hannover v Germany, (2005) 40 EHRR 1)의 기준에 따라 영국 법원이 충분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중한 손해의 요건 Requirement of serious harm】

제1조 중한 손해(Serious harm)

- (1) 진술은 그 공표가 원고의 명예에 중한 손해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 (2) 본조의 취지에서 영리를 위해 거래하는 주체의 명예에 대한 손해는 그것이 그 주체에게 중한 재정적 손실을 야기했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면 중한 손해가 아니다.

COMMENTARY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원고의 명예에 대한 실제적 및 실질적 불법행위(real and substantial tort)가 존재해야 한다(Jameel v Dow Jones & Co, [2005] EWCA Civ 75). 영국 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개인의 완전성에 대한 위협이 일정한 수준의 중요성이나 무게를 달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Wood v Commissioner for Police, [2009] EWCA Civ 414 at [22]; see also A v Norway (Application no. 28070/06)). 제소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중대한 손해도 포함된다.

명예훼손이 되기 위한 중대한 손해의 하한요건("threshold of seriousness")을 정한 것은 사소한 손해로 절차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소한 사건은 절차의 남용으로 각하된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간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의미를 갖는다.

【 항변들 Defences 】

제2조 진실(Truth)

- (1) 불만 대상 진술에 의해 전달된 비난이 실질적으로 진실함을 입증하는 것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를 위한 항변이 된다.
- (2) 제3항은 불만 대상 진술이 두 가지 이상의 별개 비난을 전달하는 경우 명예훼손 소송에 적용된다.
- (3) 만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난이 실질적으로 진실함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본조에 의한 항변은, 실질적으로 진실함이 입증된 비난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진실함이 입증되지 아니한 비난이 원고의 명예에 중한 손해를 가하지 않으면, 배척되지 아니한다.
- (4) 보통법상의 정당화 항변은 폐지되며, 따라서 1952년 명예훼손법 제5조(정당화)는 폐지된다.

COMMENTARY

제2조는 보통법상의 정당화 항변(defence of justification)을 새로운 제정법상의 진실의 항변으로 대체한다. 현행법을 널리 반영하여 일정한 요소를 단순화하고 명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1항은 실질적 진실일 것(substantially true)을 요하는 새로운 항변이다. 피고는 그가 공표한 모든 단어가 진실일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최근 판례(Chase v News Group Newspapers Ltd, [2002] EWCA Civ 1772 at para 34)를 반영한다. 피고는 명예훼손의 통점에 관해 본질적인 또는 실질적인 진실("essential" or "substantial" truth of the sting of the libel)을 입증해야 한다.

오랜 보통법 규칙은 타인의 진술을 단지 반복하였음을 피고가 입증해도 명예훼손 소송에서 항변이 될 수 없다고 해왔다("repetition rule"). 제1항은 이 규칙을 구현하기 위해 진술에 의해 전달된 비난에 초점을 맞춘다.

진실의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 언제나 쟁점이 되는 것은 i) 해당 진술에 의해 실제로 전달되는 비난이 무엇인가, 그리고 ii) 전달된 비난이 실질적으로 진실인가 여부이다. 이 항변은 비난이 사실인 경우 적용될 것이다.

제2항 및 제3항은(현행 제정법에서 의미있는 단 하나의 정당화 항변의 요소인) 1952년 법 제5조(Justification)를 대체한다. 그 효과는 불만 대상 진술이 두 가지 이상의 별개 비난을 포함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진실함이 입증된 비난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진실함이 입증되지 않은 비난이 원고의 명예를 중대하게 해하지 않으면, 그 항변은 배척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1952년 법 제5조도 같은 효과를 갖지만 더 현대적 용어로 표현된 것이다.

제4항은 보통법상의 정당화 항변을 폐지하고 1952년 법 제5조를 삭제하였다. 이것은 피고가 새로운 제정법상의 항변을 하려고 하는 경우 법원은 현행 판례법이 아니라 제정법에 사용된 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확실한



경우 현행 판례법은 새로운 제정법상의 항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해석하는 데 있어 구속적이진 않지만 유용한 가이드를 구성할 것이다.

제3조 정직한 의견(Honest opinion)

- (1) 다음 조건들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것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를 위한 항변이 된다.
- (2) 첫째 조건은 불만 대상 진술이 의견 진술인 경우.
- (3) 둘째 조건은 불만 대상 진술이 일반적이거나 특별한 조건에 의해 그 의견의 근거를 제시할 것.
- (4) 셋째 조건은 (a) 불만 대상 진술이 공표된 당시 존재했던 어떤 사실; (b) 불만 대상 진술 이전에 공표된 특권적 진술 속의 사실이라고 주장된 바에 기해 정직한 사람이 가졌을 수 있던 의견일 것.
- (5) 이 항변은 피고가 정직한 의견을 갖지 않았음을 원고가 입증하면 배척된다.
- (6) 제5항은 타인(저자)이 행한 불만 대상 진술을 피고가 공표한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그 경우 그 저자가 정직한 의견을 갖지 않았음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을 원고가 입증하면 이 항변은 배척된다.
- (7) 제4항 (b)의 취지에서 한 진술이 특권적 진술이 되는 것은 그 공표에 책임있는 자가 그와 관련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다음 항변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가졌을 수 있었던 경우이다.
 - (a) 제4조에 의한 항변(공익 사항에 관한 공표);
 - (b) 제6조에 의한 항변(과학 또는 학술 저널의 동료심사가 이루어진 진술);
 - (c) 1996년 명예훼손법 제24조에 의한 항변(절대적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법원 절차의 보도);
 - (d) 동법 제15조에 의한 항변(제한적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보도)
- (8) 보통법상 공정한 논평의 항변(defence of fair comment)은 폐지되며, 따라서 1952년 명예훼손법 제6조는 폐지된다.

COMMENTARY

제3조는 보통법상 공정한 논평의 항변(defence of fair comment)을 새로운 정직한 의견(defence of honest opinion)의 항변으로 대체한다. 동조는 현행법을 반영하여 일정한 요건을 단순 명료화하였지만, 의견이 공익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현행 요건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는 (자유 언론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설명되는) 보통법상 공정한 논평의 항변을 넓게 반영하나 의견이 공익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시키지 않는다(Spiller v Joseph [2010] UKSC 53 (at para 108; 113). 현행법상으로도 공정한 논평에서 공익은 널리 해석되어 왔고: 좁은 한계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폭넓은 지지가 있었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정직한 의견의 항변이 적용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피고가 첫째, 불만 대상 진술이 의견 진술일 것, 둘째, 불만 대상 진술이 일반적이거나 또는 특수적 조건에서건 의견의 근거를 지지했을 것, 셋째, 불만 대상 진술이 공표된 당시에 존재했던 사실 또는 불만 대상 진술 이전에 공표된 특권적 진술 속에서 주장된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한 사람이 그 의견을 가졌을 수 있을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첫째 조건은 현행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진술이 사실의 비난과 구분되어 논평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례(Cheng v Tse Wai Chun Paul, (2000) 10 BHRC 525)를 포괄한다. 첫째 조건에서 평가는 통상인이 이해하는 방법에 근거한다는 점이 묵시적으로 포함된다. 사실의 추론(inference of fact)은 의견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항변에 포괄될 것이다.

둘째 조건은 “논평은 최소한 일반적 조건에서 그것이 근거로 하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최고재판소 판례(Joseph v Spiller, [2010] UKSC 53 (at para 105))에 의해 승인된 기준을 반영한다. 둘째 조건 및 (제4항의) 셋째 조건은 명백하고 복잡하지 않은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법을 단순화할 목적을 갖는다. 그 목적은 표현

된 의견을 위해 필요한 근거에 관해 현행 보통법상 항변의 넓은 원리를 유지하는 데 있고, 판례법에서 제기되어 온 복잡성, 특히 의견의 근거가 되는 사실적 근거의 충분성 범위나, 그리고 진술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의견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지적해야 하는 범위에 관한 복잡성을 피하려는 데 있다. 이것들은 보통법이 점차 더 복잡해지고 기술적으로 변하는 분야, 그리고 판례법이 특별한 상황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관해 명료성을 위해 노력해 온 분야이다. 예를 들면, 정치적 이슈에 관한 의견을 표현하는 기사, 소셜 네트워크에 만들어진 코멘트, 계약상 분쟁에 관한 견해, 또는 음식점이나 연극 심사평에 관하여 입증될 필요가 있는 사실들은 실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셋째 조건은 객관적 기준이고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하나만 충족되면 충분하다. 그 첫째 요소는 진술이 공표될 당시 존재했던 어떠한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한 자가 그 의견을 가졌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동항에서 “어떠한 사실”이란 관련 사실들이면 충분할 것이다. 사실적 근거(factual basis)의 충분성에 관한 현행 판례법은 “정직한 사람”이 그 의견을 가졌을 수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에 의해 커버된다. 만일 그 사실이 그 의견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아니었다면, 정직한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셋째 조건의 두 번째 요소는 정직한 사람이 불만 대상 진술 이전에 공표된 특권적 진술 속의 사실이라고 주장된 어떤 것에 근거하여 그 의견을 형성했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이 목적에서 진술에 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공표에 책임 있는 인물이 제7항에 열거된 항변의 하나를 가졌을 수 있다면, 그 진술은 특권적 진술이다. 목록상 항변은 1996년 법 제 14조에 의한 절대적 특권의 항변; 동법 제15조에 의한 제한적 특권의 항변; 그리고 공적 이익 사항에 관한 책임있는 공표와 과학적 또는 학술적 저널 속의 동료심사가 이루어진 진술에 관한 본법 제4조 및 제6조에 규정된 항변이다.

제5항은 피고가 정직한 의견을 갖지 않았음을 원고가 입증하면 항변이 배척됨을 규정한다. 이것은 주관적 기준이다. 이것은 원고가 그 진술이 악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공정한 논평의 항변이 배척된다는 현행법을 반영한다.

제6항은 (예컨대, 논평 기사에 관해 그 작성자 대신 신문 편집자를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저자가 아닌 경우를 위한 규정이다. 이들 상황에서 만일 저자가 정직한 의견을 가지지 않았음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을 원고가 입증하면 그 항변은 배척된다.

제8항은 보통법상 공정한 논평의 항변을 폐지한다.

제8항은 1952년 법의 제6조도 폐지한다. 제6조는 일부 사실주장이고 일부 의견표현으로 구성되는 말에 관해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정한 논평의 항변은, 만일 의견의 표현이, 불만 대상 어구 속에 주장되거나 언급된 사실로서 사실로 입증된 것에 관련해 공정한 논평이라면, 모든 사실 주장의 진실함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이 규정은 제4항에 정해진 접근방법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필요 없다. 피고는 불만 대상 진술에 관련된 모든 개별 사실 주장의 진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첫째, 둘째, 셋째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조 공익 사항에 관한 공표(Publication on matter of public interest)

(1) 명예훼손 소송에서 다음을 입증하면 피고를 위한 항변이 된다.

- (a) 불만 대상 진술이 공익 사항에 관한 진술이었거나 그 일부를 이룬 것; 그리고
- (b) 불만 대상 진술의 공표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믿었음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제1항에 언급된 사항을 입증하였는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사건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

(3) 불만 대상 진술이, 원고가 일반 당사자였던 논쟁의 정확하고 공평한 설명이었거나 그 일부였던 경우 법원은 그 진술의 공표가 공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피고가 믿는 게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그에 의해 전달된 비난의 진실을 입증



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시해야 한다.

- (4) 피고가 불만 대상 진술의 공표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었는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편집적 판단을 참작하여야(allowance for editorial judgement) 한다.
- (5) 의문을 피하기 위해 본조에 의한 항변은 불만 대상 진술이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인지 여하를 불문하고 행사될 수 있다.
- (6) 레이놀즈 항변(Reynolds defence)으로 알려진 보통법상의 항변은 폐지된다.

COMMENTARY

제4조는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새로운 항변으로서 공적 이익 사항에 관한 책임있는 공표의 항변을 창설한다. 그것은 Reynolds v Times Newspapers [2001] 2 AC 127 사건에서 확립된 현행 보통법상의 항변에 기한 것이고, 그 사건과 추후 판례에서 확립된 원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제1항은 불만 대상 진술이 공적 이익 사항에 관한 진술이었거나 그 일부를 형성하며, 그가 그 진술의 공표에 책임있게 행동했음을 피고가 입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변을 규정한다.

이 기준의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본조는 공적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정의를 시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영국 보통법에서 잘 확립된 개념이다. 그 항변은 불만 대상 진술이 공적 이익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것이 담겨진 문서, 기사 등의 넓은 맥락에 따라, 이 전부가 공적 이익 사항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술이 생 각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기준에 관해 제2항은 피고가 진술을 공표할 때 책임있게 행동하였는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의 리스트를 정한다. 이들은 Reynolds 사건과 추후의 판례법에서 귀족원에 의해 설립된 요소들에 널리 기 반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는 항변의 범위에 관한 명료성의 흠결 등 특별한 문제를 취급하려고 추구한다. 예를 들면, 동 조가 적용되는 융통성 있는 방법과 발행인이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 및 그에 가용적이었던 자력을 참작할 필요를 반영 하기 위해(예를 들어 전국지와 비정부기관 또는 과학 저널의 맥락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다), 제2항 (a)에 “공표의 성 질과 그 맥락”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제2항에 열거된 요인들은 체크리스트나 피고가 극복할 장애의 세트로 작용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고, 법안은 법원 이 각 사례의 전체 상황과 공표 전체의 맥락 내에서 적합하다고 고려하는 예시적 및 비전체적 방식으로 그들을 정하는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기준은 법원이 피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행위했을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둘째 기준은 단지 피고가 책임있게 행동했는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요구할 뿐이다. 이것은 판례법에서 종 중 편집 재량(“editorial discretion”)으로 언급되는 바를 위해 참작될 것임을 의미한다.

제3항과 제4항은 (“신문에 의한 채택 대신 귀속된 주장의 중립적 보도(neutral reporting)를 묘사하기 위해 편리한 말로서” 법원에 의해 설명된) 보통법상 현장보도의 법리(doctrine of “reportage”)의 핵심을 요약하려는 것이다. 이 법 리가 적용되는 경우, 그 보도가 제시되는 방법은 균형된 인상을 주기 때문에, 피고는 공표 전에 보도된 정보의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3항은 공표가 원고와 다른 당사자 간의 논쟁에 관한 정확하고 불편부당한 설명(accurate and impartial account of a dispute)인 상황에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조의 취지에서 피고가 책임있게 행동했는가 여부를 결정 함에 있어서 법원은 피고 측에서 그 공표에 의해 전달된 비난의 진실을 입증하려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시해야 한다 (피고가 그 진술에 관해 원고의 견해를 들으려 하지 않은 점을 물론 포함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피고 신문은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 입증 불이행 때문에 편파적으로 취급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5항은 의문을 피하기 위해, 불만 대상 진술이 사실이거나 의견이거나에 상관없이 본조에 규정된 항변에 근거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한다.

제6항은 Reynolds defence라고 알려진 보통법상의 항변을 폐지한다. 왜냐하면 제정법적 항변은 본질적으로 보통법상의 항변을 법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법상의 항변을 폐지함은 법원이 제정법에서 사용된 문구를 적용할 것이 요구됨을 의미하지만, 현행 판례법은 새로운 제정법상의 항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해석하는 (구속적이지는 않지만) 유용한 가이드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법원은 적절한 경우 현존하는 판례법을 고려할 것이 기대된다.

제5조 웹사이트 운영자(Operators of websites)

- (1) 본조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진술에 관해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 적용된다.
- (2) 웹사이트에 진술을 게시한 자가 운영자가 아니라고 입증하는 것은 운영자의 항변이 된다.
- (3) 원고가 다음을 입증하면 항변은 배척된다.
 - (a) 원고가 그 진술의 게시자를 특정(확인)할 수 없고
 - (b) 원고가 운영자에게 그 진술에 관해 불만의 고지를 행하였고
 - (c) 운영자가 시행규칙¹⁾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불만의 고지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경우
- (4) 제3항 (a)목의 경우 원고가 그 인물에 대해 제소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진 경우에만 원고는 그 인물을 특정할 수 있다.
- (5) 시행규칙에는 다음 규정이 포함될 수 있다.
 - (a) 불만의 고지에 대한 대응으로 웹사이트 운영자가 취할 것이 요구되는 조치에 관한 규정(그것은 특히 그 진술을 게시한 자의 신원이나 연락 세목에 관한 조치 및 진술 제거에 관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 (b) 그러한 조치를 취할 시한을 명시하는 규정;
 - (c) 그 시한 경과 후 취해진 조치를 경과 전에 취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재량을 법원에 부여하는 규정;
 - (d) 기타 본조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규정
- (6) 제7항에 의해 제정된 어떤 규정에 따라, 불만의 고지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a) 원고 성명의 기재
 - (b) 문제되는 진술의 확정 및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유의 설명
 - (c) 그 진술이 게시된 웹사이트의 위치의 특정
 - (d) 기타 시행규칙에 규정될 정보의 포함
- (7) 시행규칙은 불만의 고지는 아닌 고지가 본조 또는 그에 의해 제정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불만의 고지로 취급될 상황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 (8) 본조에 의한 시행규칙은
 - (a) 상이한 상황에 따라 다른 규정을 둘 수 있고;
 - (b) 명문 문서에 의해야 한다.
- (9) 본조에 의한 시행규칙을 포함하는 명문 문서는 그 문서들의 초안이 사전에 제출되어 양원의 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0) 본조에서 '시행규칙'이란 국무장관에 의해 제정된 규정을 말한다.

1) 2013년 명예훼손법 제5조와 관련하여 웹사이트 운영자에 관한 시행규칙(The Defamation (Operators of Websites) Regulation 2013)이 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법 제5조 제3항 (c) 운영자가 시행규칙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불만의 고지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자가 시행규칙의 별표(Schedule) 조항에 부합하여 불만의 고지에 회신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불만자(청구인)가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운영자는 법 제5조 제2항의 항변에 의존한다.



- (11) 본조에 의한 항변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문제 진술의 게시와 관련하여 악의로 행동했음을 원고가 입증하는 경우에 배척된다.
 (12) 본조의 항변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에 의해 게시된 진술을 조정(moderated)했다는 이유로 배척되지 않는다.

COMMENTARY

제5조는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그 웹사이트에 게시된 진술에 관해 명예훼손 제소가 된 경우 웹사이트 운영자를 위한 새로운 항변을 신설한다.

제2항은 운영자가 그 웹사이트에 진술을 게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적용할 항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²⁾ 제3항은 원고가 그 진술을 게시한 자를 알 수 없었고, 그 진술에 관해 운영자에게 불만의 고지를 했고, 운영자가 국무장관이 제정한 시행규칙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그 고지에 따르지 않은 것을 입증하면 그 항변이 배척됨을 정한다.

제4항 및 제6항은 불만의 고지에 기재할 일정한 상세 정보를 정한다. 그 고지에는 불만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하며, 관련 진술과 그 진술이 게시된 웹사이트의 위치를 기재해야 하고, 불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불만의 고지에 포함될 기타 정보³⁾를 명시할 수 있다.

제5항은 시행규칙들에 포함될 기타 일반적 조건에서 규정들의 세목을 정한다. 이들은 고지에 대한 대담으로 운영자가 취해야 할 행동에 관한 규정(특히 진술을 게시한 자의 신원 또는 연락 세목에 관한 조치, 그리고 게시의 제거에 관한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행동을 취할 시한 및 시한 경과 후 취한 행위를 그 경과 전에 취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재량을 법원에 부여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이것은 법원이 적절하게 시한을 포기하거나 소급하여 시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허용할 것이다.

2) 웹사이트 운영자에 관한 시행규칙(The Defamation (Operators of Websites) Regulation 2013)의 별표(Schedule)에 따르면, 법 제5조 제2항의 항변을 위해, 운영자가 불만의 고지에 대해 취해야 할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웹사이트 내 진술의 삭제, 불만의 고지 접수 후 48시간 내 게시자에게 '불만의 고지 사본'과 '불만의 대상이 된 진술이 웹사이트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 통지' 등 보내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운영자는 불만의 고지에 명시된 시한의 마지막 날(불만의 고지가 전달되고 나서부터 5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 게시자로부터 회신을 받는다. 회신을 통해 게시자는 그 진술이 웹사이트에서 삭제되기 원하는지 아닌지를 운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삭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게시자는 자신의 성명과 집 주소 및 회사 주소 등을 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이러한 정보를 운영자가 불만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운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운영자가 게시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불만의 대상이 된 진술이 웹사이트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 통지 보내기는 적용되지 않으며, 운영자는 불만의 고지 접수 후 48시간 내 불만의 대상이 된 진술을 삭제해야만 한다. 운영자가 게시자와의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게시자의 전자우편이나 전자메시지 등이 운영자에게 없는(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운영자는 게시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게시자가 5일째 되는 날까지 회신하는 것에 실패하는 경우, 운영자는 진술을 삭제하고 불만자에게 그 진술이 웹사이트에서 삭제되었음을 알리는 고지를 48시간 내로 보내야 한다. 게시자가 진술이 삭제되기 원한다고 회신할 경우, 운영자는 그 회신을 받고 48시간 내로 진술을 삭제하고 불만자에게 진술이 삭제됐음을 알리는 고지를 보내야 한다. 반면 게시자가 삭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회신할 경우, 운영자는 그 회신을 받고 48시간 내로 게시자가 삭제를 원하지 않으며 진술이 삭제되지 않았음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게시자가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불만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 정보를 불만자에게 제공하고,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실을 불만자에게 고지한다. 동일한 혹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재게시하는 경우, 운영자가 동일 불만자로부터 두 가지 이상의 예전 경우에 관한 진술과 관련하여 불만의 고지를 받았고, 각각의 경우 그 진술이 이 시행규칙 별표 내용에 따라 삭제된 경우, 운영자는 그 진술과 관련하여 불만의 고지를 더 받는다. 불만자는 두 가지 이상의 예전 경우에 관한 진술과 관련하여 불만의 고지를 보낸 바 있음을 운영자에게 알린다. 이런 경우, 이 시행규칙 별표 내용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으며, 운영자는 반드시 웹사이트에서 진술을 삭제해야 한다. 여기서 진술이란 불만의 고지와 관련하여 동일한 혹은 거의 동일한 비난이나 비방을 전달하고, 동일한 웹사이트에, 동일한 사람에 의해 게재된 것을 말한다.

3) 웹사이트 운영자에 관한 시행규칙(The Defamation (Operators of Websites) Regulation 2013) 및 Guidance on Section 5 of the Defamation Act 2013 and Regulations에 따르면, 불만의 고지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정보로는 불만자가 게재된 진술의 어떠한 면을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지, 불만자가 그 진술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게시자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는 확인 등이 있다.

제6조 과학 또는 학술 저널 등에서 동료에 의해 심사된 진술(Peer-reviewed statement)

- (1) 과학 또는 학술 저널에서 진술의 공표(전자적 형태 혹은 기타 방법으로 공표된 것을 불문한다)는 다음 조건이 충족된 경우 특권이 된다.
- (2) 첫째 조건은 그 진술이 과학 또는 학술적 사항에 관한 것.
- (3) 둘째 조건은 저널에 진술이 공표되기 전에 그 진술의 과학적 또는 학술적 가치(merit)에 관한 독립적인 심사가 (a) 그 저널의 편집자 및 (b) 1인 이상의 관련 과학 또는 학술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 (4) 과학 또는 학술 저널에서 진술의 공표가 제1항에 의해 특권적인 경우 동일한 저널에서 그 진술의 과학적 또는 학술적 가치의 평가의 공표는
 - (a) 그 평가가 그 진술의 독립적 심사를 수행한 1인 이상의 자에 의해 작성되었고,
 - (b) 그 평가가 그 심사의 과정에서 작성된 것을 조건으로 특권을 갖는다.
- (5) 본조에 의해 진술 또는 평가의 공표가 특권이 되는 경우 그 진술이나 평가의 공정하고 정확한 복제, 요약이나 발췌의 공표도 역시 특권이 된다.
- (6) 공표가 악의로 행해졌음이 입증되면 본조에 의한 특권이 되지 않는다.
- (7) 본조의 어떤 것도 (a) 법률에 의해 금지된 사항의 공개를 보호하는 것으로; (b) 본조와 별도로 성립하는 특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 (8) 제3항 (a)에서 '저널의 편집자'란 1인 이상의 편집자를 가진 저널의 경우 관계 진술의 공표 결정에 책임있는 편집자나 편집자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COMMENTARY

제6조는 과학 또는 학술 저널에서 동료에 의해 심사된 자료에 관해 새로운 제한적 특권의 항변을 창출한다. 의학 저널도 이에 포함된다.

제1항 내지 제3항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경우 적용할 항변을 규정한다. 첫째 조건은 그 진술이 과학적 또는 학술적 사항에 관한 것임, 둘째 조건은 저널에 진술이 공표되기 전에 그 진술의 과학적 또는 학술적 가치(merit)에 관한 독립적인 심사가 그 저널의 편집자 및 1인 이상의 관련 과학 또는 학술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것임. 둘째 조건의 요건은 책임있는 동료심사 프로세스의 핵심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8항에서 저널의 편집자란 1인 이상의 편집자를 가진 저널의 경우 관계 진술의 공표 결정에 책임 있는 편집자나 편집자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편집인 회의체(board of editors)가 결정에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할 수 있다.

제4항은 그 항변에 의한 보호를, 동일한 저널에서 동료심사가 이루어진 진술의 과학적 또는 학술적 가치의 평가의 공표에까지 확대하는데, 거기에는 그 평가가 그 진술의 독립적 심사를 수행한 1인 이상의 자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 평가가 그 심사의 과정에서 작성된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것은 그 특권이 동료심사가 이루어진 진술의 저자뿐 아니라 독립적인 심사를 수행한 자로서, 예를 들어 저자에 의해 원래 제출된 논문을 평가할 필요가 있거나 코멘트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5항은 동조에 의해 동료심사가 이루어진 진술과 관계 평가에 부여된 특권이 관련 진술이나 평가의 공정하고 정확한 복제, 요약이나 발췌의 공표에도 확대된다고 규정한다.

제6항에 의해, 동조에 의해 주어진 특권은 만일 그 공표가 악의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입증되면 상실되는데, 그것은 다른 형태의 제한적 특권에 부착된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다. 새 조문이 과학 또는 학술 저널에 진술을 공표하는 자가 다른 형태의 특권, 즉 제7조 제9항에 의해 과학 또는 학술 회의의 절차에 관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 등에 주어지는 특



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읽혀지지 않게 하려고 제7항 (b)를 넣었다.

제7조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보도 등(Reports etc protected by privilege)

[법 조문 생략]

COMMENTARY

제7조는 1996년 법에 포함된 절대적 및 제한적 특권의 항변에 관한 규정을 이들 항변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한다.

제1항은 법원 절차의 공정하고 정확한 동시 보도(fair and accurate contemporaneous reports of court proceedings)에 적용되는 절대적 특권에 관한 1996년 법 제14조 제3항을 대체한다. 현재 제14조 제3항은 영국 내 법원, 유럽사법재판소 및 그 부설 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그리고 유엔 안보회의 또는 영국이 참가한 국제협정에 의해 설립된 국제형사법정의 공개 절차에 관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에 적용될 절대적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이것을 새로운 항으로 대체하는데, 그것은 그 항변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국 밖의 국가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원의 절차 및 유엔 안보회의 또는 국제협정에 의해 설립된 국제 법원 및 법정에서의 절차도 커버하게 하고 있다.

제2항은 1996년 법의 제15조 제3항에서 사용된 '공적 이익'이란 문구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공적 관심'이란 용어로 대체한다. 제6항 (b)는 공적 회의의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 등(fair and accurate reports etc of public meetings)에 확대된 특권에 관해 1996년 법의 별표1의 12호 (2)에서 동일한 개정을 한다.

제3항 내지 제10항은 1996년 법 별표1 제2부를 개정하여 여러 분야에서 제한적 특권의 항변이 적용가능한 상황을 확대한다. 1996년 법 제15조 및 별표1은 현재 여러 타입의 보도나 진술에 적용될 제한적 특권을, 공적 관심 사항에 관한 보도나 진술이 공정하고 정확함, 그리고 그 공표가 공공 편익을 위한 것이고 악의 없이 행해졌음을 조건으로, 규정한다. 별표1 제1부는 설명이나 반박 없이 제한적 특권을 끌어들이는 공표의 범주를 정한다. 이들은 세계 어느 곳이든 (국가 및 지방 양자의) 입법부, 법원, 공적 조사, 국제 조직이나 회의, 그리고 이들 주체에 의해 공표된 문서, 고지 및 기타 사항의 공개된 절차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fair and accurate reports of proceedings in public)를 포함한다.

별표1 제2부는 제한적 특권의 보호를 받는 공표의 범주를 정하는데, 그 공표자가 요구된 경우, 설명 또는 정정의 방법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서신이나 진술의 공표를 거부하거나 태만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들 중에는 정부 또는 (경찰 같은)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당국 또는 법원에 의해 공공을 위해 공표되는 정보의 복사 또는 발췌; (지방 당국 등의) 공적 회의 및 영국 공기업의 일반 회의에서 절차에 관한 보도; 그리고 영국 또는 EU 내에 설립된 협회(예술, 과학, 종교 또는 학습, 상거래 협회, 스포츠협회 및 자선협회 등)의 사실확인이나 결정(findings or decisions)에 관한 보도가 포함된다.

항변이 확대되는 여러 타입의 공표로부터의 공정하고 정확한 복제 또는 발췌에 이미 제공되는 보호에 더해, 동조 제4항, 제7항 (b) 및 제10항은 공정하고 정확한 자료의 요약에 커버하기 위해 제한적 특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을 행한다. 예를 들어, 제4항은 그 항변을 공공의 정보를 위해 다수의 정부 기관에 의해 발행된 고지나 기타 사항의 요약, 그리고 법원에 의해 제공되는 문서의 요약에 확대한다.

현재 별표1 제1부의 제한적 특권은 입법부; 법원; 그리고 세계의 기타 다수 포럼의 공개된 절차에 관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에 확대된다. 그러나 제2부의 제한된 특권은 영국 및 EU 국가 내에서 생기는 공표에만 적용된다. 제4항, 제6항 (a), 제7항 및 제8항은 그 항변의 범위를 확대하여 세계 각지의 여러 타입의 공표를 커버한다. 예를 들어 제6항은 공

적 회의 절차에 관한 보도에, 제8항은 일정한 종류의 협회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다.

제5항은 세계 각지에서 공적 이익 사항에 관한 논의를 위해 개최된 기자회견(press conference)에서의 절차에 관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에 제한적 특권을 확대한다. McCartan Turkington Breen v Times Newspapers Ltd에서 실시된 바와 같이 현행법에 의하면 기자회견은 1996년 법 별표1의 제12조의 공적 회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제2부의 제한적 특권은 영국 공기업의 일반 회의 및 문서의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에만 확대된다. 제7항은 이를 세계 각지의 공기업에 관한 보도에 이를 확대한다.

제9항은 1996년 법 별표1에 새로운 호를 삽입하여 과학 회의 또는 학술 회의의 절차에 관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 및 그러한 회의에 의해 공표된 사항의 복제, 발췌 및 요약에 별표2의 제한적 특권을 확대한다.

【 단일 공표 규칙 Single publication rule 】

제8조 단일 공표 규칙(Single publication rule)

- (1) 본조는 (a) 공공에 진술을 공표한 자(최초 공표자)가 (b) 그 진술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진술을 (공공에게 하든 하지 않든) 다시 (subsequently) 공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2) 제1항에서 “공공에 공표”에는 공공의 한 부분에 대한 공표를 포함한다.
- (3) 1980년 기간제한법 제4A조(명예훼손 소송의 제소기간)⁴⁾의 취지에서 재공표(subsequent publication)에 관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인(cause of action)은 최초 공표일에 발생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 (4) 본조는 최초 공표의 방법과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행해진 경우 재공표에 적용되지 않는다.
- (5) 재공표의 방법이 최초 공표와 실질적으로 다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할 사항에는 (여타 사항 중) 다음이 포함된다.
 - (a) 진술에 주어지는 주목도(prominence)의 수준
 - (b) 재공표의 범위
- (6) 본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 (a) 1980년 기간제한법 제32A조(명예훼손 소송 등에 대한 제소기간 배척의 재량)⁵⁾에 의한 법원의 재량에는 영향이 없으며,

4) 참고로 1980년 기간제한법(Limitation Act 1980) 제4A조(명예훼손 소송의 제소기간)에는 “소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에는 소송이 제기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으며 이 내용이 1996년 명예훼손법 제5조 제소기간(Limitation of actions: England and Wales)에 편입되었다.

5) 참고로 1980년 기간제한법(Limitation Act 1980) 제32A조(명예훼손 또는 악의적 허위 소송 제소기간의 재량에 의한 배제)에는 “(1) (a) 본법 제4A조의 운영이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불리하게 하고 (b) 본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을 불리하게 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소송의 진행을 허용함이 형평에 맞는 것으로 법원이 생각하는 경우, 법원은 동 조항이 그 소송에 적용되지 않거나 또는 그 소송에 관한 특정 소인에 적용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법원은 본조에 의해 행위함에 있어서 사건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a) 원고 측의 기간 지연의 길이 및 그 이유 (b) 그 지연의 이유가 제4A조의 기간 만료 시까지 소인에 관련된 사실이 원고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인 경우에는 (i) 그가 그 문제 사실을 안 시점 및 (ii) 그 문제 사실이 소인을 발생시킬지 모를 사실을 알고 그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 범위 (c) 지연을 고려해 관련 증거가 (i) 사용불가능하였거나 (ii) 제소기간 내에 제소된 경우보다 더 적합하지 않은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부동산, 상품의 구두 명예훼손 혹은 기타 악의적 허위 소송이 개인적 대표에 의해 제기된 사례에서 (a) 위 제2항의 원고에는, 소인이 발생했던 고인과 그의 이전 개인적 대표자가 포함되며 (b) 본법 제28조 제3항은 본조에 의한 법원의 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었으며 이 내용이 1996년 명예훼손법 제5조 제소기간(Limitation of actions: England and Wales)에 편입되었다.



(b) 동조 제1항 (a)에서 동법 제4A조의 운영에 관한 언급은 본조와 제4A조의 운영에 관한 언급이다.

COMMENTARY

제8조는 동일 공표자에 의한 동일한 자료의 공표에 관해, 그 자료를 공공 또는 그 일부에 최초 공표한 날부터 1년 경과 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 공표의 법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명예훼손적 자료의 공표 각각이 그 자체의 제소기간(limitation period)을 갖는 별개의 소인을 발생시킨다는 오래된 원리(the “multiple publication rule” 복수 공표 규칙)를 대체한다.

〈제8조는 동일한 공표자에 의한 동일한 자료의 공표와 관련하여 최초 공표일 이후 1년을 경과하여 제소를 제한하는 단일 공표의 법리를 도입하고 있다. 제소기간은 법원에의 효과적인 접근권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를 끌어들이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중요한 목적, 즉 법적 확실성과 중국성을 보증함에 기여한다.” 동조는 원고가 그의 명예를 옹호하기 위해 제소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6항은 1980년 기간제한법 제32A조에 의해 소송 진행을 허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경우 법원이 제소기간을 포기할 재량을 보유함을 확인하고 있다.〉

제1항은 동 조항이 공공(또는 제2항에 공공의 일부에 대한 공표를 포함)에 진술을 공표하는 경우, 그리고 이어서 그 진술이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진술을 공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그 목적은 동 조항이 동일한 내용 또는 변경이 너무 사소하여 명예훼손적 진술의 본질이 이전 공표에 포함된 진술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경우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에 대한 공표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공표에서 문제가 대면되는 것은 이 시점부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 규정이 공공일반에 대한 공표에 이르는 것만을 포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개시 시점으로 선택되었다. 제2항의 정의는 한정된 수의 사람에 대한 공표(예컨대, 블로그가 소그룹의 가입자나 팔로워를 가진 경우)가 커버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제3항은 본조의 범위 내의 추후 공표와 관련해 제기된 소의 소인에 관한 제소기간은 최초 공표의 일자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취급하도록 한다.

제4항은 추후 공표의 진술의 방법이 최초 공표의 방법과 실질적으로 다른(“materially different”) 경우에 단일 공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정한다. 제5항은 이 쟁점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할 사항에 진술에 주어지는 주목성의 수준(level of prominence)과 추후 공표의 범위가 포함됨을 정한다. 가령 한 스토리가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웹사이트 섹션에 있어서 수차 클릭을 거쳐야만 그것에 액세스할 수 있었으나 추후에 그 사이트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액세스될 수 있어 그 히트 수가 현저히 증가하는 증진된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이다.

제6항은 동조가, 형평에 맞도록 1년 넘는 제소기간에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될 수 있게 허용하는, 1980년 기간제한법 제32A조에 의한 법원의 재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제32A조는 법원이 모든 사정을 고려할 것을 요하는 넓은 재량을 정하며, 그것은 기간 제한의 적용과 관련하여 본조에 의해 야기되는 부당함에 대처하려는 것이다.

【 Jurisdiction 관할권 】

제9조 영국 또는 가입국 등의 비거주자에 대한 소송

(Action against a person not domiciled in the UK or a Member State etc)

- (1) 본조는 (a) 영국 (b) 타 가입국 또는 (c) 루가노 협약 계약 당사자인 국가 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적용된다.
- (2) 불만 대상 진술이 공표된 모든 장소 중에서 영국과 웨일즈가 그 진술에 관해 제소함에 명백히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법원이 만

- 족하지 않으면, 법원은 본조가 적용되는 소송을 심리 및 결정할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
- (3) 제2항에서 불만 대상 진술에 관한 언급은 그것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비난을 전달하는 진술에 관한 언급을 포함한다.

COMMENTARY

제9조는 명예훼손 관광("Libel tourism")의 문제에 대처할 목적을 갖는다. 유럽의 관할 규칙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제1항은 영국과 그다지 큰 연계를 가지지 않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송을 피해자에게 유리한 명예훼손법을 갖는 영국 법정에 제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2항은 영국 법원이 명예훼손 심리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한 영국 법원은 재판관할권을 갖지 않음을 규정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호주에서는 10만부가, 영국에서는 5,000부만이 발행된 경우 영국 법원이 아닌 호주 법원에 관할이 인정됨을 의미한다.

제3항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명예훼손적 진술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도 제2항이 적용됨을 정한다.

제10조 저자, 편집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소송 (Action against a person who was not the author, editor etc)

- (1) 불만 대상 진술의 저자, 편집자 또는 발행인에 대한 제소가 합리적으로 실용적인 한, 법원은 저자, 편집자 또는 발행인이 아닌 자에 대해 제기된 소송을 심리하고 결정할 관할을 갖지 않는다.
- (2) 본조에서 '저자', '편집자' 및 '발행인'은 1996년 명예훼손법 제1조(공표의 책임)⁶⁾에서의 의미와 같다.

COMMENTARY

제10조는 명예훼손적 진술의 원래 공표자가 아닌 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한다.

제2항은 저자, 편집자 또는 발행인에 관한 용어 정의 규정이다.

6) 1996년 명예훼손법 제1조(공표의 책임) 중 '저자', '편집자' 및 '발행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저자("author"), 편집자("editor") 또는 발행인("publisher")은 제3항에서 상술되는 바와 같이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저자는 진술의 원작자(originator)로서 그의 진술이 공표되기를 의도하지 않은 자를 제외하며; 편집자는 진술의 내용 또는 공표의 결정에 편집 또는 동등한 책임을 갖는 자를 의미하며; 발행인은 영업적 발행인(commercial publisher), 즉 그의 영업이 공공 또는 공공의 일부에 대해 자료를 내는 자로서 그 영업의 과정에서 그 진술을 포함하는 자료를 내는 자를 의미한다.

(3) 오직 다음의 행위에만 참여한 자는 저자, 편집자 또는 발행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

(a) 해당 진술을 포함하는 인쇄자료를 인쇄, 제작, 배포 또는 판매하는 행위;

(b) 해당 진술을 포함하는 영화나 음반을 처리, 복제, 배포, 전시 또는 판매하는 행위;

(c) 해당 진술이 기록된 전자매체를 처리, 복제, 배포 또는 판매하는 행위 또는 해당 진술이 전자적 형태로 검색, 복제 배포되거나 사용 가능한 수단에 의해 장비,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작업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d) 해당 진술에 대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진술을 포함하는 라이브 프로의 방송사인 경우

(e) 해당 진술이 자신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자에 의해 전송 또는 사용가능한 수단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운 영하는 자 또는 제공자인 경우 (a) 내지 (e)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해당 인물이 해당 진술의 저자, 편집자 또는 발행인으로 간주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규정들을 유추할 수 있다.

(4) 저자, 편집자 또는 발행인의 피고용자나 대리인은 그들이 해당 진술의 내용 또는 그 발행 여부 결정에 책임 있는 한도에서 그들의 사용자나 본인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 배심 재판 Trial by jury 】

제11조 법원 명령이 없는 한 배심 없이 재판 가능

(Trial to be without a jury unless the court orders otherwise)

[법 조문 및 해설 생략]

【 법원 판결의 요지 Summary of court judgement 】

제12조 법원 판결의 요지가 공표되도록 명할 법원의 권한

(Power of court to order a summary of its judgement to be published)

- (1)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를 위해 판결을 내리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요지를 공표하도록 피고에게 명할 수 있다.
- (2) 요지의 문안 작성과 그 공표의 시간, 방법, 형태 및 장소는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한다.
- (3) 당사자들이 문안 작성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 (4) 당사자들이 공표의 시간, 방법, 형태 및 장소에 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상황에 따라 상당하고 실용적이라고 간주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5) 본조는 법원이 1996년 명예훼손법 제8조 제3항(청구의 약식 처분)에 따라 원고를 위해 판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OMMENTARY

1996년 법 제8조에 의한 약식 재판 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 간에 시정이나 사죄 내용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패소한 피고에게 그 판결 요지의 공표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12조는 명예훼손 절차에서 법원이 더 일반적으로 그 판결 요지를 공표하도록 명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1항은 법원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를 위해 피고가 그 판결의 요지를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그 요지의 문안 작성과 공표의 시간, 방법, 형식 및 장소가 당사자 간 합의할 사항임을 정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법원이 그 문안 작성을 해결할 수 있고, 공표의 시간, 방법, 형식 및 장소에 관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고 생각되는 바대로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5항은 법원이 1996년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약식 재판 절차는 적절한 경우 계속 사용될 수 있는 별도의 절차이다.

【 진술의 삭제 등 Removal, etc of statement 】

제13조 진술의 삭제 또는 배포 중지 명령 등

(Order to remove statement or cease distribution etc)

- (1)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는 경우 법원은 다음을 명할 수 있다.
 - (a) 명예훼손적 진술이 게시된 웹사이트 운영자가 그 진술을 삭제할 것 또는
 - (b) 명예훼손적 진술의 저자, 편집자 또는 발행인이 아니었던 자에게 그 진술을 포함하는 자료의 배포, 판매 또는 전시를 중지할 것.
- (2) 본조에서 저자, 편집자 및 발행인은 1996년 명예훼손법 제1조에서의 의미와 같다.
- (3) 제1항은 동향에서 벗어난 법원의 권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COMMENTARY

제13조는 명예훼손적 진술의 저자가 그 진술이 전파·확산되는 것을 막거나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항상 있지는 않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제1항은 법원이 원고의 명예훼손 건을 판단할 때, 명예훼손적 진술이 게재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그 진술을 제거하거나 그 진술의 저자, 편집자, 혹은 발행인이 아니더라도 그 진술을 배포, 판매, 또는 전시한 자라면 그 확산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명예훼손 절차가 결론 나는 동안 혹은 결론 나는 즉시 그 진술이 삭제될 수 있게 한다.

【 구두 명예훼손 Slander 】

제14조 구두 명예훼손에서 특별 손해(Special damage)

- (1) 1891년 여성 구두 명예훼손법은 폐지한다.
- (2) 사람이 전염성 또는 감염성 질병을 갖는다고 하는 비난을 전달하는 진술의 공표는, 그것이 그에게 특별 손해를 발생하지 않는 한 구두 명예훼손의 소인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COMMENTARY

제14조는 1891년 여성 구두 명예훼손법을 폐지하며 특별 손해에 관한 보통법 규칙을 반복한다.

구두 명예훼손에 있어서, 그 공표가 일정한 특별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불만 대상 진술에서 나온 특별 손해가 입증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진술되고 공표된 말로서 여성의 부정 또는 간통을 비난하는 것은 그 제소에 특별 손해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1891년 법의 규정이 포함된다. 제1항은 동법을 폐지함으로써 이들 상황에서도 특별 손해의 요건이 면제되지 않게 하고 있다.

제2항은 불만 대상 진술에 의해 전달된 비난이 원고가 전염성 또는 감염성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이면 특별 손해의 요건을 면제하는 보통법 규칙을 폐지한다. 19세기 이전부터 판례법에서 나병, 성병 및 전염병 비난 사건에는 그 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시되어 왔다.

제15조 이하 일반 규정 General provisions

[법 조문 및 해설 생략]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과제



홍문기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015년 4월 21일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로 경기도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글은 토론회에서 발표된 홍문기 교수의 발제문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향을 기술하고 있어 이번 호에 수록합니다. 전문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정보 자료실 내 각종자료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언론중재제도의 변화와 성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는다.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주요내용은 인터넷 매체를 조정대상 매체로 포함하여 기존에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인터넷 매체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포털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자 언론중재제도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다. 대부분의 뉴스가 포털을 통해 소비됨에도 포털은 관련 법률에 언론으로 정의되지 않아 포털이 매개한 뉴스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할 수 없

는 제도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009년 언론중재법의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법은 포털과 같이 보도를 매개하는 매체를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여 조정대상으로 포함했고, 인터넷 기반 매체는 위원회의 주요 조정 대상 매체가 되었다.

침해적 보도의 무한 복제·전파와

피해구제업무의 공백

그런데 각종 정보의 유통 채널이 디지털 미디어 중심으로 이동하고 뉴스 이용 양상이 변화

하면서 언론중재제도의 피해구제에 공백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침해적 보도가 무한 복제되고 전파되는 상황에서 검색을 통해 문제가 되는 기사와 정보는 언제나 무한정 재생 가능해졌고, 언론조직에 의해 생산된 기사가 언론조직이 다루는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는 삭제되어도 각종 포털 사이트, 블로그, 카페, 뉴스크레이션, SNS에서는 여전히 유통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지금까지 인격권 침해 기사에 대해 정정, 반론, 추후보도, 손해배상만 이용해 피해를 구제하는 방식으로는 피해구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언론피해구제 쟁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법적 장치는 보도가 지면 또는 방송을 통해 단발로 제공되던 올드 미디어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비록 언론중재법의 제·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이나 포털과 같은 온라인 미디어가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 등 그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기는 했지만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해 구제 방법이나 절차가 개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가 주요 조정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드 미디어 중심 구제제도로는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한번 생산된 보도의 저장성이 영구적인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사삭제청구권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정보도 등의 1회적 대응으로는 영구 게재되는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기 어려우므로 삭제를 통한 ‘피해상태의 제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사삭제청구권 도입 주장은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에 바탕을 두고 있다.

2013년 3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2010다60950판결은 인터넷 기사가 웹사이트에 축적되고 언제 어디서나 검색을 통해 열람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명예훼손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기사삭제청구를 명시적으로 인용했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나 매개로 인한 피해의 발생 시 정정, 반론, 추후보도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독일에서는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법 이론상 이미 확립되어 판례에 의해 발전돼왔다. 또한 앞서 설

명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 구체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 한편, 위원회에서 정정보도 등과 별개로 기사삭제를 통한 조정합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실무적으로 많이 있고, 이로 인한 제도적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기 때문에 기사삭제청구권의 도입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즉, 제척기간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 반론보도의 경우 해당보도가 있음을 안 지 3개월 이내, 보도가 있는 지 6개월 이내로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추후보도의 경우는 형사 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한번 이루어진 보도의 경우 지속적인 검색이 가능하므로, 만일 그 보도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의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의 구속을 받지 않도록 하여 그 침해 또는 우려가 존재하는 한 행사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 법제에 의하면 인격권은 대세적 효력에 의해 그 방해자에 대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방해상태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권리는 그 주체가 생존하는 한 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2013년 명예훼손법

역시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1년으로 정하여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위 기간 제한에 의해 피해구제를 거부함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고, 특히 악의적 허위 명예훼손 소송의 경우 위 1년의 제소기간은 기타 형평법상의 청구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제·전파된 권리 침해적 보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 언론중재제도에서는 언론사 등의 보도나 매개로 인한 명예훼손 등 침해적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중재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동일한 보도의 내용이 블로그나 카페 등 언론중재법과 신문법상 언론으로 정의되지 않은 곳으로 복제되어 전파된 경우는 ‘정보’로 취급되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피해자들은 동일보도가 복제·전파된 글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일괄 구제를 받지 못하고 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동일보도가 인터넷상 블로그, 카페 등에 복제·전파된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일괄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으로 언론조직이 생산한 기사가 복제·전파된 경우와 그 이후 발생하는 침해적 보도에 대해서는 그 원(原) 보도에 잘못이 있음이 인정돼 정정 등의 조정이나 결

정이 있어도 사실상 구제가 어려운 경향이 있다. 이처럼 원 보도의 잘못이 인정돼 정정, 반론보도 또는 삭제가 이루어진 이후 원 보도의 내용이 블로그나 카페 등에 복제·전파되어 존재할 경우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는 구제됐다고 할 수 없다. 원 보도 언론사의 보도가 명예훼손적 내용일 경우, 언론사뿐만 아니라 블로그 등으로 복제되어 나간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조정이 가능해야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하므로 복제된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적 댓글에 대한 처리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신청인들은 원 보도뿐 아니라 잘못된 보도에 근거한 댓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 요청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보도로 인한 위법적·침해적 댓글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괄 구제 차원에서 댓글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에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잘못된 보도를 바탕으로 한 댓글이나 글 자체에 명예훼손 등 침해적 내용을 담고 있는 댓글에 대해서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이 경우 기사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보호와 관련돼 있는 사안은 언론중재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사 등이 인신공격이나 인종 차별성 악성 댓글에 대처하는 방식을 참고할 만하다.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우선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청구 대상이 되는 ‘언론’의 범위를 정보 유통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저장·검색·유통되는 언론기사 및 언론기사에서 파생된 제반 정보에 의한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둘째, 오늘날 전통 언론매체에 적용되는 피해구제 제척기간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구제를 무력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원화 된 인터넷기사 및 인터넷정보 관련 피해구제시스템은 ‘사실상 언론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언론중재법 및 신문법상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뉴스 서비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을 통한 언론 정보의 유통량과 인격권 침해 표현 사례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중재제도가 실질적으로 시민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중심으로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기사 및 정보의 피해구제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조정중재신청,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Eye-Net

<http://people.pac.or.kr>

언론중재 Eye-Net 이란?

- 언론중재 Eye-Net은 전자적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전산정보시스템입니다.
-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상담, 조정 및 중재신청, 심리준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론중재 Eye-Net을 찾아주세요.

언론중재 Eye-Net 이용안내

1. 전자제출 _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중 각종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민원 _ 문고 답하기와 1:1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각종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송달 확인 _ 위원회에서 전자 송달한 각종 통지서, 조정조서, 결정서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나의 전자심리 _ 나의 사건 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진행 중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www.pac.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pacnews

트위터: twitter.com/pac_news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일반논문 공모

언론중재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학술적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을 창간합니다.
「미디어와 인격권」 창간호에 게재할 일반논문을 공모하오니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연구주제 :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 응모자격 :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종사자, 기타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 원고마감 : 2015년 8월 20일(목)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최대 180매)
- 논문접수 : 이메일 접수(journal@pac.or.kr)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가 최종 확정된 논문은 원고료(200만 원)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조하시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02)397-3042)으로 문의 바랍니다.